

外國人著作權保護의 經濟的 波及效果

—出版物을 中心으로—

鄭 鎮 勝

새로운 著作權法이 今年 7月부터 施行됨에 따라 外國人著作物을 國內에서 出版하기 위하여는 外國著作權者에게 著作權 使用料를 支給해야 한다. 1984年 현재 翻譯된 外國人著作物의 規模는 8,255種, 金額으로 약 440億원으로 各各 全體의 24.9%와 10.9%에 달한다. 本研究에서는 外國人著作權 保護에 따른 出版物의 價格上昇으로 인한 消費者 負擔의 增加와 著作料 支給으로 인한 外貨支出 負擔을 分析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國內出版產業의 現況을 分析하여 外國人著作物의 無斷翻譯·複寫出版物의 市場規模를 把握하고, 둘째 著作物 生産費用의 構造와 流通過程의 把握을 통하여 著作物의 消費者價格 決定要因을 分析하고, 셋째 이러한 資料를 活用하여 外國人著作權 保護時의 價格上昇 및 外貨支出規模를 推定하였다. 分析結果에 의하면 外國人著作權의 保護로 인하여 翻譯物과 複寫物의 價格은 各各 12%와 25% 上昇하며, 1987~91年 기간중 外國著作權者에게 支給될 著作料의 規模는 98億원(1,200萬달러)에 달할 것으로 豫想된다.

I. 序

政府는 1980年 새로운 著作權法을 作成하였으며 今年 7월부터 施行하기로 결정한 바 있

筆者: 本院 研究委員

* 本稿를 읽고 有益한 助言을 해주신 李永琪·宋大熙·楊秀吉博士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남아 있는 어떠한 미비점도 筆者의 책임임을 밝히 둔다.

1) 現行著作權法 第46條.

2) 改正法 第3條.

다. 우리나라가 比較的 短期間內에 改正著作權法을 成案하게 된 이유는 1957年 制定된 現行 著作權法이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著作權者의 保護強化를 통한 文化의 暢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根本的인 원인은 美國을 위시한 先進國으로부터 外國人著作物의 保護要求에 基因한다고 할 수 있다. 즉 政府는 實質的으로 外國人著作權의 保護를 否定하는 現行著作權法¹⁾으로 인한 對外通商摩擦을 해소하기 위하여 改正著作權法에서는 外國人의 著作權保護를 認定²⁾하고 있으며, 今年

중 世界著作權協會(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도 加入할 豫定이다³⁾.

本論文의 目的은 出版物을 中心으로 外國人 著作權의 保護로 인한 經濟的 波及效果, 즉 出版物의 價格上昇으로 인한 消費者負擔의 增加와 著作料支給으로 인한 外貨負擔등에 關하여 分析함에 있다⁴⁾. 이를 위하여 第Ⅱ章은 著作權制度의 目的, 意義에 關하여 略述하였으며 第Ⅲ章에서는 우리나라 出版產業의 現況에 關하여 論하였다. 第Ⅳ章은 外國人著作權保護에 따른 經濟的 波及效果를 分析·豫測코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第Ⅴ章은 結論部分으로 構成된다.

Ⅱ. 著作權의 主要內容 및 意義

著作權은 著作자가 자신이 創作한 著作物에 關해서 갖는 排他的 權利를 의미하며 크게 著

作財產權과 著作人格權으로 區分된다.

著作財產權은 著作자의 財產的 利益을 保護하고자 하는 權利로서, 주로 著作物을 第3者가 이용하는 것을 許諾하고 代價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이다. 이에는 複製權, 實演權, 演奏權, 放送權, 上映權 등이 포함된다.

著作人格權은 著作物을 정신적 創造物로 규정하고 이러한 知的財產은 著作자의 人格을 반영하며 人格 밖에 存在하는 物的財產보다 한층 더 尊貴하게 評價되어야 하는 非金錢的인 第2의 權利를 의미한다. 이에는 公表權(著作物의 公表 여부), 同一性維持權, 姓名表示權 등이 포함된다.

한편 최근에 대두된 概念인 著作隣接權이란 實演家, 「레코드」製作者, 放送事業者의 經濟的 利益을 위하여 著作物利用과 關連하여 주어질 權利로서, 實演家가 갖는 錄音·錄畫·放送 獨占權과 「레코드」製作者가 갖는 「레코드」複製을 獨占權 및 放送事業者가 갖는 複製權, 再放送, 有線放送 및 TV放送의 傳達權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經濟的인 側面에서 著作權制度의 存在에 關하여는 다음의 두 가지 論難이 있을 수 있다. 著作物을 創作하기 위하여는 장기간 동안 막대한 人的·物的資源이 投入되어야 하며, 이러한 投資는 적정한 利潤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論理에서 著作權制度는 創作意慾을 促進시키는 하나의 社會的 手段으로서 妥當性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⁵⁾. 또한 著作物의 出版을 위한 生産費用中 著作料, 印刷組版費 및 編輯費用 등 固定費用이 차지하는 比重은 매우 높아 出版物의 規模가 增大함에 따라 限界生産費用(marginal production cost)은 完滿하게 減少하는 반면 平均生

3) 改正著作權法은 外國人著作權 保護 외에도 다음의 主要事項을 포함하고 있다.

- (1) 著作權者의 權益伸張을 위하여 著作權의 保護範圍를 擴大하고 著作財產權의 保護期間을 연장하였으며 著作隣接權을 新設하고(法 第 34, 74, 37, 61~67 條)
- (2) 著作物에 대한 公共利用의 伸張을 위하여 著作權 非侵害行爲인 著作權制限 경우를 현실에 맞게 細分化하여 規定하였으며(改正法 第 20~31 條), 公益上 필요한 著作物은 文公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상당한 補償金의 支給 또는 供託 후 著作物의 이용이 可能하도록 하였으며(改正法 第 47~49 條)
- (3) 著作者와 利用者의 便宜를 圖謀하기 위하여 著作權委託管理業 制度를 新設하고(改正法 第 75~77 條) 著作權 紛爭의 迅速한 仲裁을 위하여 著作權仲裁委員會를 設置한 것(改正法 第 78~86 條) 등을 포함하고 있다.
- 4) 엄밀한 의미에서 外國人著作權의 波及效果는 放送, 音盤, 公演 등 광범위하겠으나, 本稿는 현재 社會에서 제일 論難이 되고 있는 出版產業에 국한하기로 한다.
- 5) 道德的인 面에서도 創作物은 著作者 個人 人格의 연장으로서 著作者는 自身의 著作物을 出刊·配布할 것인 가를 결정할 수 있는 權利를 保護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産費用(average production cost)은 급격히下落하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著作權制度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著作物複寫企業은 막대한 固定費用의 投入없이 出版物의 複寫가 가능하여 出版企業에 비하여 낮은 價格으로 製品의 生産이 可能하며, 결과적으로 出版企業은 市場에서의 成功可能性이 낮은 著作物의 出版配布를 축소함으로써 著作物을 통한 社會權益은 減少하게 된다.

著作權制度가 經濟的 論理에서 否定的으로 해석되는 중요한 이유는 著作權이 創作者에게 일정기간 排他的 使用權을 부여함으로써 獨占(legal monopoly)을 形成하여 非效率的인 資源의 分配과 不公正去來行爲를 유발할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創作된 著作物은 公共財(public goods)의 性格을 갖을 뿐 아니라 第3者의 使用으로 인하여 他人의 效用이 減少하지 않는 消費의 非競爭的(non-rivalness) 性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著作物의 活用을 위한 社會費用(social cost)이 存在하지 않는 한 社會福祉의 極大化를 위하여는 著作物의 利用價格은 “0”으로 해야 한다는 論理에서 출발한다.

著作權制度의 存在妥當性에 관하여는 贊反兩論이 存在하고 있으나 이를 위하여는 根本的으로 다음의 질문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과연 著作權制度가 著作物의 創作에 얼마만큼 寄與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著作權制度가 著作物創作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現行의 著作權制度가 創作意慾을 增大시킬 수 있는 유일한 制度인가 하는 점과 著作權制度의 運用에 따른 社會的費用과 이로 인한 社會的權益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는 만약 著作權

制度가 소기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制度라고 한다면 현재 著作權制度가 적절히 著作權者의 利益을 保護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歷史적으로 著作權制度가 존재하지 않을 당시에 많은 著作物이 創作되었다는 사실은 著作權制度가 모든 종류의 著作活動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主張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게 한다. 이는 많은 著作者들이 著作物을 통한 金錢的 利益의 確保보다는 名譽를 존중한다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複寫企業은 社會에 複寫著作物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는 相當量을 生産·配布해야 하며, 이는 結果적으로 過剩供給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出版企業의 著作物價格이 適正하게 결정되어진 상황에서 複寫物의 生産은 價格의 下落을 초래하여 出版企業과 複寫企業이 동시에 損失을 초래할 위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出版企業은 市場先占을 통하여 消費者에게 이미 認知되어 있기 때문에 複寫企業은 相對적으로 보다 많은 廣告費를 支拂해야 하는 價格上昇 誘發要因이 있으므로 소위 浸透費用(penetration cost)을 支給해야 한다. 또한 先發 出版企業은 複寫企業이 出現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市場을 獨占할 수 있어 複寫出版物이 生産되는 時點에서는 價格이 限界生産費用과 동일한 소위 擊殺版(killing edition, 혹은 fighting edition) 등을 出版하여 複寫企業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論理를 綜合하여 볼 때 모든 著作物의 創作·出刊·配布를 위하여는 著作權制度가 필수적이며 유일한 制度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즉 첫째 著作權이 存在하지 않더라도 創作되며 複寫企業이 존재해도 出版企業이 生

528名中 自營業主 및 無給家族從事者가 전체의 2.5%인 313名, 被雇傭者中 生産職勤務는 60%인 7,528名, 事務職 및 기타 從業員은 37.5%인 4,687名에 달하고 있다. 즉 出版産業은全體從業員中 生産職이 차지하는 比重이 우리나라 全産業中 제일 낮은 반면 事務職의 比重은 제일 높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國內 出版圖書의 流通過程上의 문제점, 즉 出版社가 良書의 出版으로 國民의 호응을 얻고자 하는 努力보다는 類似한 製品의 販賣競爭을 통한 賣出額 增大를 위하여 營業 및 販促人員을 과다하게 保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從業員 1人當 生産額 및 附加價値는 200~299名을 雇傭하고 있는 企業體가 39백만원과 13백만원으로 제일 높으며 나머지 企業은 12백만원~27백만원과 6백만원~13백만원 水準으로 分布되어 있다. 반면 종업원 1인당 有形 固定資產은 200~299名을 保有한 企業이 4.3백만원으로 제일 낮다. 이는 出版企業의 最適

規模(optimum scale)가 從業員 200~299名 雇傭規模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給與面에서 살펴보면 종업원 1人當 年平均 給與額은 340만원에 이른다. 賃金水準은 企業規模가 增大함에 따라 比例적으로 上昇하여 5~9名 雇傭業體의 平均 年給與額이 230만원임에 비하여 500名以上 雇傭業體는 이보다 약 2배 높은 430만원에 이른다. 이는 出版産業의 賃金이 從業員의 生産性과는 관계없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 生産原價面에서 살펴보면 總生産額中 直接生産費가 차지하는 比重은 53%를 점유하며 間接生産費는 全製造業中 제일 높은 11%를 차지하고 있다. 間接生産費가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國內出版産業이 出版物의 品質 向上보다는 販賣促進을 위한 諸活動費가 他産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1984年の 國內 總出版物을 國內外 著者別로

〈表 2〉 圖書出版現況(1984)

(단위 : 種, 千원, %)

	國內總出版 ¹⁾		翻譯出版		UCC(死後25年)		빠른(死後50年)		B/A	C/B	D/B
	種數	金額(A)	種數	金額(B)	種數	金額(C)	種數	金額(D)			
總類	695	16,999,775	96	309,006	84	289,640	86	297,840	1.8	93.7	96.4
哲學	1,239	6,440,783	510	2,916,448	339	1,395,131	357	1,555,513	45.3	47.8	47.8
宗教	2,503	40,374,117	927	4,269,558	856	3,896,429	862	3,918,728	10.6	91.3	91.3
社會科學	3,968	23,798,805	506	1,650,529	458	1,612,059	462	1,618,229	6.9	97.7	98.0
純粹科學	696	4,008,798	235	1,056,530	233	1,054,230	234	1,055,230	26.4	99.8	99.9
技術科學	2,901	17,002,881	221	1,776,259	220	1,768,759	220	1,768,759	10.5	99.6	99.6
藝術	1,689	18,275,815	204	948,610	139	755,970	143	770,650	5.2	79.7	79.7
語學	1,611	25,419,919	332	3,932,830	328	3,873,730	328	3,873,730	15.5	98.5	98.5
文學	7,861	36,228,514	3,033	15,528,504	2,049	9,274,316	2,260	10,209,493	42.9	59.7	65.7
歷史	993	5,938,114	117	381,393	101	363,167	103	368,392	6.4	96.6	96.6
兒童圖書	5,553	41,731,595	2,551	11,134,184	1,046	4,604,315	1,136	5,059,928	26.7	41.4	45.4
學習參考書	3,547	168,003,810	23	111,250	18	71,250	18	71,250	0.1	64.0	64.0
合計	33,156	404,282,926	8,255	43,975,100	5,871	28,958,995	6,209	30,567,741	10.9	65.9	69.5

資料 : 1) 大韓出版文化協會, 『韓國出版年鑑』, 1986.

2) 外는 韓國開發研究院.

분류하면 翻譯된 外國人著作物은 8,255種에 440億으로 全體種數와 金額面에서의 비중은 각각 24.9%, 10.9%이며 이는 內國人著作物에 비해 卷當平均價格이 낮음을 의미한다.

出版分野別 外國人著作物の 比重을 살펴보면 哲學이 全體出版의 45%인 29億원으로 제일 높고, 다음은 文學이 43%인 155億원, 兒童圖書가 27%인 111億원, 純粹科學이 26%인 11億원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2). 만약 우리나라가 外國人著作權을 遡及하여 50年 認定한다고 할 경우 外國人이 著作權利를 主張할 수 있는 國內出版物의 規模는 兒童圖書가 翻譯出版物의 45.4%인 50億원으로 가장 낮으며 哲學이 48%인 16億원, 學習參考書는 64%인 0.7億원, 文學은 65.7%인 102億원으로 나타난다. 즉 이는 翻譯出版의 比重이 큰 分野中 兒童文學, 學習參考書, 文學, 哲學 등은 著作權을 遡及認定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는 出版物의 比重이 큰 반면, 純粹科學, 技術科學, 語學 등은 비교적 최근에 著述된 外國人著作物

을 翻譯하여 國內出版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外國人著作權의 認定과 더불어 심각한 영향을 받는 分野라고 할 수 있다.

이들 翻譯出版物이 外國에서 최초 出版된 時點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全體의 21%인 1,723種, 金額上으로는 全體의 17%인 약 77億원이 外國에서 1977年⁶⁾以後에 出版된 著作物로 밝혀졌다. 年度別로는 1982年, 즉 外國에서 出刊된 지 2年 경과된 著作物이 同期間中 出版物의 37%인 639種이 翻譯出版되었으며 金額面으로도 全體의 42%인 32億원을 차지하고 있다(表 3 참조).

出版物 統計에 포함되지 않은 外國人著作物의 複製(reprint) 規模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金額으로 年間 약 150億~250億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Ⅳ. 外國人著作權保護의 經濟的 波及效果

〈表 3〉 著作年度別 翻譯著作物

(단위: 千部, 千원)

	種類(A)	部數(B)	總額(C)
1977	129	250	521,000
1978	179	252	643,496
1979	182	303	989,883
1980	198	288	928,633
1981	220	495	825,607
1982	639	1,488	3,208,327
1983	131	152	348,695
1984	45	85	205,359
合 計	1,723	3,413	7,671,000

資料: 韓國開發研究院.

外國人著作權保護의 經濟的 波及效果는 현재까지 國內에서 아무 계약없이 出版할 수 있었던 外國人著作物의 無斷翻譯·複寫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發生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첫째 外國著作權者와 著作權 讓渡協商을 통한 著作權 使用料의 支給없이 國內에서 翻譯出版이 가능함으로써 낮은 價格으로 出版物의 生産·販賣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外貨支出이 절약될 수 있었으며, 둘째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外國著作物의 翻譯·複寫出版時 著作權 讓渡協商이 불필요하여 비교적 短期間內에 새로운 先進文化의 유입이

6) 著作權에 관한 韓美協定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行政指導를 통하여 美國의 著作權을 10年(즉 1977년 이후부터)間 遡及保護하기로 한 바 있다.

가능하였다. 반면 短點으로는, 첫째 一部出版物의 重複翻譯·出版으로 인한 出版市場秩序의 沮害 및 重複된 社會費用의 支給, 둘째 世界의인 海賊出版國으로 인식되어 國家의 信賴性墜落과 빈번한 對外貿易摩擦 要因으로의 作用 등을 들 수 있다.

外國人著作權 保護強化로 인한 經濟的 波及效果의 經路와 規模는 보다 엄밀한 意味에서 다음의 要素에 의하여 決定된다. 첫째 著作權法의 內容과 運用方法이다. 특히 著作權의 保護期間, 著作權의 遡及與否(retroactivity), 公正使用(fair use)과 強制實施權(non-voluntary license)의 範圍와 運用方法이다. 현재의 著作權法은 著作權의 保護期間을 著作者的 生存期間과 死後 30年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改正著作權法은 著作者 死後 50年으로 規定하고 있다⁷⁾.

著作權의 遡及保護란 改正著作權法의 發效에 의하여 外國人의 著作權이 保護될 경우 과거에 이미 國內·外에서 出刊된 著作物도 遡及하여 保護할 것인가의 與否이다. 만약 外國人著作物의 保護를 遡及하여 認定할 경우 著作者 死後 50年⁸⁾이 경과되지 않은 外國의 著作物은 앞으로 著作權者의 허락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出刊이 가능하게 된다. 반면, 遡及을 不認定할 경우에는 이미 國內·外에서 出刊된 著作物은 公共財(public goods)로 規定되어 著作權이 認定되지 않으므로 과거와 같이

자유로이 翻譯·複寫出版이 가능하며 앞으로 새로이 著述되는 創作物에 대하여만 著作權이 認定된다. 改正著作權法은 外國人著作權의 遡及을 認定하고 있지 않다⁹⁾. 다만 美國에서 著作權이 認定된 出版物中 1977年 以後에 간행된 著作物의 複寫는 行政指導를 통하여 國內 出版·配布를 著作權改正法의 公布와 동시에 禁止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著作物의 公正使用(fair use)은 社會의 公益을 위하여 일정한 範圍內에서 著作權者의 著作財產權을 制限하는 것을 意味한다. 이에 대하여 改正著作權法은 裁判節次, 學校教育, 時事報道, 引用, 非營利目的, 私的使用, 圖書館利用, 試驗問題, 占字, 放送事業者의 一時的 錄音 등을 위하여 著作物을 翻譯·複寫하여 利用하는 경우에는 著作權을 制限하고 있다¹⁰⁾.

둘째 改正著作權法이 發效되어 外國人의 著作權이 保護될 경우 外國人著作物의 翻譯·複寫를 위하여는 著作權者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國內에서 外國人著作物에 대한 需要가 發生할 경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① 外國人著作權者가 國內出版者에게 적정한 條件으로 利用을 許諾하여 著作物을 出版하도록 하는 경우, ② 外國人著作權者가 國內에 合作 혹은 外國人投資出版會社를 設立하여 直接出版에 간여할 경우, ③ 外國人著作權者가 外國에서 出版된 完製出版物을 輸出하는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經濟的 波及效果는 利潤極大化를 目標로 하는 外國人著作權者가 어떠한 方法으로 外國人著作物의 國內需要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決定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著作權의 改正과 동시에 國內에서 出版되는 外國人著作物의 國內價格은 著作權料

7) 改正著作權法(案) 第34條

國際著作權保護協定인 U.C.C.는 최소한 著作者的 死後 25年以上, Berne 條約은 死後 50年으로 規定하고 있음.

8) Berne條約 基準.

9) 改正案 附則 第2條 참조. U.C.C.는 著作物의 遡及에 관하여 明確히 規定하고 있지 않은 반면 Berne條約은 著作權의 遡及認定을 明文化하고 있다.

10) 改正著作權法 第20~33條.

支給에 따른 生産原價의 增加로 인하여 上昇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消費者의 需要行態가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外國人著作物의 複寫·翻譯物에 대한 需要의 價格彈力值에 의하여 決定될 수 있다. 外國人著作物의 需要에 대한 價格彈力值은 著作物의 性格¹¹⁾, 代替著作物의 存在有無¹²⁾ 등에 의하여 決定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外國人著作權을 認定할 경우의

- 11) 專門書籍의 경우 價格의 變化에 비하여 需要의 變化는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彈力值은 매우 작다고 가정할 수 있다.
- 12) 代替著作物이 存在할 경우 價格이 他著作物트 需要가 代替되므로 彈力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 13) 著作權 使用料는 著作物의 特性, 著作權者의 選好 등에 따라 賣出額의 一定率 以外에도 여러 가지 形態를 支給될 수 있다.
- 14) 外國人著作權이 認定될 경우 國內企業은 外國人著作物의 翻譯·複寫出版을 위하여 著作者로부터의 出版許諾과 이에 대한 著作權 使用料의 支給이 불가피하다. 理論적으로 外國人著作權을 讓渡받은 企業은 國內에서 排他的인 出版權을 保有하게 됨으로써 市場은 完全獨占狀態로 변하게 된다. 著作料의 支給은 出版企業의 可變費用을 통하여 生産原價와 出版物價格의 上昇을 의미한다. 利潤極大化가 목적인 獨占企業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價格과 出版量을 決定한다.

$$(1) P_1(Q) + \frac{Q}{P} \cdot Q_1 = \Delta C_1^v$$

여기서, $P_1(Q)$: 著作料 支給後의 出版物價格
 Q_1 : 著作料 支給後의 出版物生産量
 P, Q : 著作料 支給前의 出版物價格 및 生産物
 ΔC_1^v : 著作料支給으로 인한 限界生産費用의 增加

式(1)을 다시 需要의 價格彈力值(price elasticity of demand)를 활용하여 表示하면,

$$(2) P_1 \left[1 + \frac{Q_1}{P_1} \cdot \frac{dP}{dQ} \right] = P_1 \left[1 + \frac{1}{\epsilon} \right] = \Delta C_1^v$$

여기서 ϵ 는 價格上昇에 대한 需要量의 變化를 意味

式(2)에서 만약 우리가 著作權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價格과 出版量, 즉 P, Q 와 著作權使用料 및 需要의 價格彈力值(ϵ)에 관한 資料를 갖는 경우,

$$(3) P_1 = P(1 + \alpha)$$

$$(4) Q_1 = \epsilon \frac{(P_1 - P) \cdot Q}{P}$$

外國人著作權者에게 支給되는 著作料를 $R = \alpha \cdot P_1 Q_1$ 으로 表示된다.

經濟的 波及效果는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推計될 수 있다. 먼저 論理의 전개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假定하자.

(1) 國內企業은 著作權移轉을 통하여 外國人著作物을 出版하며 국제관례에 준하여 翻譯 및 複寫物의 著作權使用料는 消費者價格의 7%와 15%로 한다¹³⁾.

(2) 翻譯物과 複寫物의 국내 出版金額은 1984年末 統計를 기준으로 하여 各各 440億원과 200億원으로 推定한다.

(3) 國內의 外國人著作物에 관한 市場構造는 外國人著作權者의 認定前과 後에 變化가 없다고 假定한다. 일반적으로 外國人著作權의 사용을 허락받은 企業은 國內市場에서 獨占出版權을 확보하며 企業의 利潤極大化를 위하여 限界費用과 限界收入이 均衡($MC=MR$)되는 점에서 價格 및 生産量을 결정할 것이다¹⁴⁾.

그러나 國內의 外國人著作物 需要者가 公正 使用에 관한 규정을 效率적으로 활용하고 著作權 關聯當局이 強制實施權을 최선의 方法으로 運用한다면 市場構造는 完全競爭狀態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4) 出版物의 國內流通經路는 出版企業→書籍商→最終消費者의 형태로 構成되며 出版物의 最終價格決定을 위하여 出版企業 및 書籍 中間商은 mark-up pricing戰略을 따른다고 假定한다.

出版企業의 經營目標은,

$$\text{Max } \pi_p = P_p \cdot Q - C_p \cdot Q \dots\dots\dots(1)$$

$$P_p = (1 + \alpha) C_p \dots\dots\dots(2)$$

여기서, π_p : 出版會社의 利益

P_p : 出版會社의 出荷價格

Q : 出版會社의 販賣量

C_p : 生産原價
 α : mark-up pricing factor

한편 書籍中間商의 經營目標은,

$$\text{Max } \pi_d = (P - P_p)Q \dots\dots\dots(3)$$

$$P = (1 + \beta)P_p \dots\dots\dots(4)$$

여기서, π_d : 書籍中間商의 利益
 P : 出版物의 市場價格
 β : 書籍中間商의 賣出額對比 純
 收益率

國內의 出版會社가 外國著作物의 國內出版
 을 위하여는 著作權料(royalty)를 支給해야 하
 며, 이는 出版物의 生産原價와 市場價格의 上
 昇을 의미한다. 만약 外國著作權者에게 支給
 되는 著作料를 R 이라 하고 이는 出版物價格
 의 一定率이라고 한다면,

$$R = rP^1 \dots\dots\dots(5)$$

여기서, r : 著作權料(royalty rates)
 P^1 : 著作權料 支給後의 出版物價
 格

出版企業의 經營目標은,

$$\text{Max } \pi_p = P_p \cdot Q^1 - C_p^1 \dots\dots\dots(1)'$$

여기서, π_p : 著作權料 支給後의 出版會社
 利益
 P_p : 著作權料 支給後의 出版會社
 出荷價格
 Q^1 : 著作權料 支給後의 出版會社
 販賣量
 $C_p^1 = C_p + R$ 著作權料 支給後의

15) C_p 는 不變.
 16) 資料는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經濟企劃院)의 『企業
 經營分析』(韓國銀行)에서 算出.

出版會社 生産原價
 書籍中間商의 經營目標은,

$$\text{Max } \pi_d = P^1 \cdot Q^1 - C_p^{15)} \dots\dots\dots(2)'$$

여기서, π_d : 著作權料 支給後의 書籍中間
 商 利益
 式 (1)~(5)를 정리하면,

$$P_p = C_p(1 + \alpha)$$

$$P_p^1 = (C_p + R)(1 + \alpha)$$

$$P = C_p(1 + \alpha)(1 + \beta)$$

$$P^1 = (C_p + R)(1 + \alpha)(1 + \beta)$$

$$R = rP^1, \text{ 즉 } P^1 = \frac{1}{r}R$$

따라서,

$$(C_p + R)(1 + \alpha)(1 + \beta) = \frac{1}{r}R \dots\dots\dots(6)$$

式 (1)~(6)을 활용하여 계산한 結果¹⁶⁾, 즉
 外國人著作物의 國內翻譯出版을 위하여 著作
 料를 7% 支給할 경우 卷當價格은 12% 증가
 한 2,576원으로 上昇하며 卷當 平均 著作料支

〈表 4〉 外國人著作權保護의 波及效果
 (翻譯出版物) (단위: 百萬元)

	0.3	0.7	1	1.5	2
1987					
賣出額	298	283	272	253	235
著作料	21	20	19	18	16
1988					
賣出額	885	841	808	753	698
著作料	62	59	57	53	49
1989					
賣出額	6,549	6,223	5,979	5,571	5,163
著作料	458	436	419	390	361
1990					
賣出額	8,789	8,351	8,023	7,476	6,929
著作料	615	585	562	523	485
1991					
賣出額	11,621	11,042	10,608	9,885	9,161
著作料	813	773	743	692	641
著作料 合計	1,969	1,873	1,800	1,676	1,552

〈表 5〉 外國人著作權保護의 波及效果(複寫出版物)

(단위 : 千원)

단 력 치	0.3	0.7	1	1.5	2
1987					
賣 出 額	667,913	595,706	541,550	451,550	361,031
著 作 料	100,187	89,356	81,233	67,694	54,155
1988					
賣 出 額	2,007,744	1,790,688	1,627,900	1,356,588	1,085,263
著 作 料	301,162	268,603	244,185	203,488	162,789
1889					
賣 出 額	18,815,188	16,781,113	15,255,556	12,712,963	10,170,369
著 作 料	2,822,278	2,517,167	2,288,333	1,906,944	1,525,555
1990					
賣 出 額	25,235,888	22,507,681	20,461,525	17,051,275	13,641,019
著 作 料	3,785,383	3,376,152	3,069,229	2,557,691	2,046,153
1991					
賣 出 額	33,261,178	29,665,913	26,969,013	22,474,175	17,979,934
著 作 料	4,989,267	4,449,887	4,045,268	3,371,126	2,696,901
著作料 合計	11,998,277	10,701,165	9,728,248	8,106,943	6,485,553

給額은 180원으로 산출된다. 만약 外國人著作物의 翻譯出版規模가 年 10%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需要의 價格彈力值(price elasticity of demand)에 따른 外國人著作權 使用料의 支給은 〈表 4〉와 같다.

〈表 4〉에 의하면 1987년부터 우리나라가 外國人著作權을 保護할 경우의 波及效果는 需要의 價格彈力值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彈力值(ϵ)와 波及效果는 反比例한다. 外國人著作權을 保護하기 시작하는 1987年度의 著作料支給額은 약 16百萬원~21百萬원으로 추정되며 1987~91年 기간중의 著作料支給 總額은 약 16億원~20億원으로 예상된다.

外國人著作物의 複寫出版物은 어떠한 종류

의 著作物이 出版되고 있으며, 外國人이 著作物을 創作한 후 얼마만큼의 시간이 경과되어 國內에서 出刊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資料의 蒐集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複寫出版物이 外國에서 최근 出刊된 專門書籍인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需要의 彈力值는 비교적 작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價格이 上昇할 경우 公正使用을 통한 私의 複製가 가능하여 오히려 彈力值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84年의 國內市場規模를 200億원으로 추정하고, 年 成長率을 10% 假定할 경우 外國人著作權保護時 國內複寫出版物市場에 미치는 波及效果의 推計는 〈表 5〉와 같다. 만약 우리나라가 遡及을 認定하지 않고 外國人著作權을 保護할 경우 1987年의 著作料支給額은 약 54百萬원~1億원으로 推定되며, 1987~91年 기간중의 著作料 總支給額은 약 65億원~120億원으로 豫想된다¹⁷⁾.

이상에서 推定된 翻譯과 複寫出版物에 대한 總著作料支給額을 〈表 6〉을 통해 보면 外國人

17) 外國人著作權者는 國內出版企業에게 著作物使用權을 移轉하지 않고 合作會社를 設立하여 스스로 國內에서 翻譯物 혹은 複寫物의 出版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外國人著作者는 出版物의 數量과 가격조정을 통하여 利潤을 極大化하려 할 것이다. 실제로 推計한 결과에 의하면 外國人著作者가 合作會社를 통하여 翻譯物을 出版할 경우 利益은 著作權의 移轉의 경우에 비하여 利益이 낮아짐으로써 대부분의 合作會社는 外國人著作物의 複寫出版에 主力할 것으로 豫想된다. 이 경우 合作會社에 의한 出版物이 대부분 專門書籍으로서 研究 및 學校教育을 目的으로 使用되

著作權의 첫해인 1987年度에는 7千萬~12千萬 원으로 豫想되며 1987~91年 기간중에는 약 80億~140億이 豫想된다.

〈表 6〉 外國人著作權保護時 著作料支給額 推計
(단위:百萬元)

		0.3	0.7	1	1.5	2
1987	翻譯 (1)	21	20	19	18	16
	複寫 (2)	100	89	81	68	54
	(1)+(2)	121	109	100	86	70
1988	翻譯 (1)	62	59	57	53	49
	複寫 (2)	301	269	244	203	163
	(1)+(2)	363	328	301	256	212
1989	翻譯 (1)	458	436	419	390	361
	複寫 (2)	2,822	2,517	2,288	1,907	1,526
	(1)+(2)	3,280	2,953	2,707	2,297	1,887
1990	翻譯 (1)	615	585	562	523	485
	複寫 (2)	3,785	3,376	3,069	2,558	2,046
	(1)+(2)	4,400	3,961	3,631	3,081	2,531
1991	翻譯 (1)	813	773	743	692	641
	複寫 (2)	4,989	4,450	4,045	3,371	2,697
	(1)+(2)	5,802	5,223	4,788	4,063	3,338
合計	(1)	1,969	1,873	1,800	1,676	1,522
	(2)	11,997	10,701	9,727	8,107	6,486
	(1)+(2)	13,966	12,574	11,527	9,783	8,038

V. 結 論

현재의 著作權制度는 著作物이 인류의 福祉 向上에 크게 寄與함을 감안하여 著作權의 權益保護를 통한 著作活動을 促進시킴과 동시에

고 있으며 이들이 著作權法의 公正使用 條項에 의하여 著作權 保護에 제의됨을 감안할 때 價格의 내폭적인 上昇은 불가능할 것으로 豫想된다. 즉 合作會社에 의하여 出版되는 複寫物의 價格이 현재의 複寫物價格보다 매우 높은 水準에서 결정될 경우 대부분의 利用者들은 私的複寫物을 活用할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合作會社의 設立에 의한 經濟的 波及效果는 本文의 結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豫想된다.

이러한 著作物이 短期間內에 活用되어 社會福祉에 寄與하게 하려는 두 가지 目的을 포함하고 있다.

강력한 著作權制度에 의한 著作權者의 過剩保護는 創作意慾을 增大시키는 肯定的 效果가 있는 반면, 著作物의 社會的活用을 制限하고 資源의 非效率的 分配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著作權者의 保護를 소홀히 하는 著作權制度는 단기적으로는 著作物의 활용을 통한 社會利益의 增大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著作意慾을 沮害하는 否定的 效果가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著作權制度는 著作權者의 權益을 적절히 保護함으로써 同制度가 추구하는 目標을 동시에 達成할 수 있도록 改正・運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現行著作權法으로 認定하지 않고 있는 外國人著作權을 保護하여 얻는 肯定的 效果는,

첫째 無分別・無責任한 翻譯規制를 통한 海外文化의 選別導入이 가능하며,

둘째 重複翻譯이 防止되어 一部書籍의 出版費가 60~70% 감소될 것으로 豫想됨으로써 價格下落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으며,

셋째 人類文化暢達에 기여함으로써 對外 이미지의 改善이 가능하며,

넷째 著作物의 去來秩序確立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國內創作活動의 促進과 國內 著作物이 海外의 著作權에 의하여 保護됨으로써 얻는 文化的・經濟的 長點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外國人著作權을 保護함으로써 우리나라가 支給해야 하는 經濟的인 波及效果는,

첫째 翻譯 및 複寫出版物의 國內價格은 各 各 약 12%와 25% 上昇할 것으로 豫想되며 外國人著作權者에게 支給될 著作物使用料는

〈表 6〉으로 推定된다.

둘째 外國人著作權者와의 著作權讓渡 交渉이 필요함에 따라 外國著作物의 國內出版이 지연될 수 있다.

外國人著作權 保護로 인한 肯定的인 面을 最大化하고 否定的인 面을 最小化하기 위한 補完策으로는,

첫째 外國著作權者로부터 獨占出版權을 양도받은 國內企業이 市場獨占的 地位를 惡用하여 發生될 수 있는 不公正行爲를 規制하기 위하여 公正去來法의 改善이 必要하며,

둘째 적절한 條件과 形態로 著作物利用權을 國內出版企業에 移轉을 거부하는 外國人著作權者의 著作權 남용 및 오용을 防止하기 위하여 國內業界가 強制許諾制度를 신속히 活用할 수 있도록 同制度를 補完하며,

셋째 대부분이 零細企業인 國內出版社가 國際版權契約 慣習에 대한 無知와 交渉능력부재로 競爭力 喪失과 倒産의 위험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政府의 多角的인 支援이 要求된다고 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87.
文化公報部, 『著作權改正法律案』, 1986.
鄭鎮勝, 『著作權制度에 關한 研究』, 韓國開

發研究院, 近刊.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85, 1986.

「金利效果의 構造的 分析」: 論評

李 性 輝

*

金利調整의 經濟的 效果에 대한 論議는 과거에도 꾸준히 있어 왔지만 최근 다시 金融政策의 중요한 爭點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韓國開發研究』 1985年 가을號에 실린 朴元巖 博士의 論文, 「金利效果의 構造的 分析」¹⁾을 다시 한번 吟味해 보는 것도 意義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朴元巖 博士는 金融後進國의 特徵을 반영하고 있는 計量模型을 제시하고 이 模型을 利用하여 金利引上의 效果를 分析하고 있다. 이러한 接近方法은 金利의 效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金利論爭’에 있어서 論議의 次元을 한 단계 높여 理論的 模型을 적극 활용하면서 金利政策의 效果를 綜合的으로 分析하고 評價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서 意義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重要한 公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朴元巖 博士의 論文에는 몇 가지 問題點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論文은 보는 觀點에 따라 하나의 통일된 論文이 아니라 두 개의 別個의 論文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論文의 構成을 보면 I. 序文 II. 우리나라의 金利·物價 및 成長에 관한 觀察 III. 模型 IV. 金利引上의 構造的 分析 V. 金利引上의 政策시뮬레이션 및 VI. 結論의 6個의 章으로 되어 있다.

第Ⅲ章과 第Ⅳ章은 開發途上國의 金融部門과 實物部門의 構造的 特徵을 반영하는 基本理論模型을 제시하고, 이 模型의 靜態分析和 動態分析을 이용하여 金利引上의 效果를 理論的으로 分析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그 자체로 하나의 完結된 論文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第Ⅱ章과 第Ⅴ章은 實證分析和 關聯된 부분인데 第Ⅲ章과 第Ⅳ章의 理論模型의 實證的 分析으로는 다소 미흡하고, 理論模型과의 밀접한 關聯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이

筆者: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1) 朴元巖, 「金利效果의 構造的 分析」, 『韓國開發研究』, 第7卷第4號, 1985. pp. 14~33.

부분은 朴元巖 博士가 방대한 작업을 하여 만들고 있는 KDI 分期模型과 관련된 자료의 정리 내지 朴元巖 博士의 기본적 시각의 정립과 관련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다.

論文에 대한 細部的 論評은 두 부분을 분리하여 理論模型에 관한 論評을 먼저 정리한 후 實證分析에 관한 論評을 하고자 한다.

理論模型의 기본적 골격을 보면 그 目的이 開發途上國의 金融部門과 實物部門의 構造의 特徵을 포착할 수 있는 閉鎖經濟下의 單純巨視模型을 만드는 데 있다. 金融市場은 制度金融市場과 私債市場으로 構成되어 있고 非金融市場은 不動產市場으로 대표되는 「인플레이 헤지」市場으로 되어 있다. 實物部門은 아주 단순하게 貯蓄函數와 投資函數로 나타내어지며 物價上昇은 인플레이즘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Lewis型의 勞動過剩經濟를 가정하여 제도적으로 결정된 諸水準의 實質賃金 $W(=\frac{R}{P})$ 에서 무제한의 勞動供給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또한 Harrod-Domar類의 生産函數를 가정하여 生産量—資本比率(a) 및 勞動—資本比率(b)이 모두 일정하다고 본다. 貯蓄函數를 보면 利潤率과 貯蓄間의 상관관계를 강조하여 Cambridge型의 貯蓄函數

$$S = sr \cdot K$$

s : 貯蓄率常數

r : 利潤率

를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理論模型은 하나의 理論模型으로서의 훌륭하고, 또한 著者가 주장하고 있듯이 「인플레이 헤지」市場을 資產市場에 포함시켜 부동산에 대한 투기활동이 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하고 定型化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經濟를 分析하기 위한 模型으로서의 여러 가지 韓國經濟의 실정과는 거리가 먼 假定들이 결합되고 있어 그 結論을 韓國經濟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① Lewis型의 무제한 勞動供給의 假定 ② Harrod-Domar流의 生産函數 ③ Cambridge型의 貯蓄函數 및 ④ 閉鎖經濟의 假定은 각자으로 볼 때는 經濟分析上의 유용성이 있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現實經濟가 있겠지만 비가치 假定을 결합하는 경우 現實性의 측면에서 韓國經濟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한 가지 부수적인 점을 지적한다면 公金利引上이 不動產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특이하다. p. 29에 의하면 “不動產市場을 想定하여 公金利引上으로 金融資金이 不動產市場으로 流出되는 現象을 관찰할 수 있다. 즉 公金利引上으로 不動產을 덜 수요할 때, 短期的으로는 不動產의 實質價値가 일정하므로 不動產의 價格이 오를 것이라는 期待를 形成하여 資金이 不動產市場으로 逆流할 수 있다.”고 보는 데 一般的 견해와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러한 結論은 模型의 특이성에 기인하는 것 같다.

다음으로 實證分析과 관련된 측면에 관하여 몇 가지 論評하고자 한다. 第II章에서 金利, 物價, 成長率 및 通貨 等の 變數의 相關關係를 정리해 놓고 이를 이용하여 필자의 기본적 시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다소 특이한 점이 있다. 두 가지 예를 든다면 p. 18을 보면 “[圖 1]과 <表 1>은 公金利와 私金利가 매우 밀접하게(相關係數 $\rho=0.79$) 관련되어 움직이며 私金利와 物價도 매우 큰 相關係數를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여 公金利의 引上은 物價引上에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로 되어 있고, p.20에 의하면 “[圖 2]와 <表 2>는 公金利와 通貨量의 關係를 나타내고 있는데 公金利 引上時 通貨量의 絶對水準은 줄어들으나 通貨增加率은 上昇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제시된 자료만으로써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實證分析 全體를 통하여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通貨量을 內生變數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金融政策의 歷史를 볼 때 政策當局은 오랫동안 通貨量을 政策變數로 보고 이를 조절하여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通貨量을 內生變數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第V章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第III章과 第IV章에서 제시된 理論模型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朴博士가 만들고 있는 KDI 分析模型을 이

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로서 그 내용이 理論模型과는 밀접한 관련이 적다. 여기서도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면 “실제로 公金利를 2% 「포인트」 상승시킬 때 私金利는 대체로 1.5%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總通貨는 미미하나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정리하고 있어 通貨量을 內生變數로 취급하고 있는 면이 나타난다.

이상의 論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假說과 理論的 分析들을 사용하여 金利引上의 效果를 構造的으로 分析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論文이며, 현 단계에서 金利를 引下할 경우 어떤 效果가 나타날 것인가를 論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훌륭한 示唆點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金利效果의 構造的 分析」: 應答

朴 元 巖

*

金利調整은 傳統的으로 中央銀行의 主要政策手段이었으니만큼 餘他 政策手段과 마찬가지로 그 效果에 대해 많은 論難이 있어 왔다. 종종 理論과 現實은 커다란 乖離를 보였으며 특히 開發途上國에서는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진 理論이 開發國自體의 諸般與件으로 理論의 기본이 흔들리기 십상이다.

어떠한 經濟歪曲은 통념적으로 타당한 結論을 뒤집어 놓으며 이러한 經濟歪曲을 무시한 채 理論적으로 타당한 政策을 수행하면 엉뚱한 結果만을 초래하게 된다. 어떠한 經濟歪曲 또는 開發國의 특수한 經濟構造를 가정하고 이로부터 論議를 전개하는 部類의 사람들을 ‘構造論者’라고 부르며 본인이 『韓國開發研究』 1985年 가을號에 寄稿한 「金利效果의 構造的 分析」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金融市場의 특

殊與件을 構造的으로 分析하고 이로부터 ‘正統的’ 經濟政策의 ‘非正統的’인 效果를 밝혀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正統的’ 經濟政策을 ‘非正統的’으로 수행하여야만 ‘正統的’인 效果를 거둘 수 있음을 주장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非正統的’ 效果가 잉태되는 現實을 직시하고 이를 초래하는 經濟歪曲 또는 經濟構造를 發展的으로 解體 또는 改善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었다.

본인의 拙稿에 대하여 李性輝 教授는 여러 가지로 자세한 論評을 하여 주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應答하려고 한다. 먼저 李性輝 教授의 論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論文構成上的 問題이다. 拙稿의 第V章 金利引上의 政策시뮬레이션은 第III章과 第IV章의 理論의 論議에 대한 완전한 實證分析이 될 수 없다.

둘째, 第III章의 理論模型의 主要假定, 즉 Lewis 型의 無制限勞動供給의 假定, Harrod-Domar流의 生産函數, Cambridge型의 貯蓄函

數, 閉鎖經濟의 假定은 너무나 단순하거나 韓國經濟의 實情과는 거리가 멀다.

세째, 第Ⅱ章의 相關係數를 이용한 資料分析으로 기본적 시각을 정립할 수 없다.

네째, 通貨를 內生變數로 보고 있다.

이상을 다시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論文의 構成이나 展開가 순조롭지 못하며 通貨를 內生化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이상의 論評은 本人의 拙稿가 하나의 理論模型에서 출발하여 實證分析까지 포괄하는 보다 완전한 論文이 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本人은 準備中인 다른 論文을 통하여 不動產市場을 포함하는 實證分析結果를 제시하려 한다. 또한 本論評은 本人이 拙稿에서 의도했던 바를 분명히 하지 못했음에 연유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다음에서는 네 가지 論評에 대하여 筆者가 의도했던 바를 다시 정리하여 應答하려고 한다.

첫째, 拙稿의 第Ⅴ章은 論評者가 지적하고 있듯이 第Ⅲ, Ⅳ章의 理論模型에 대한 實證分析이 아님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第Ⅴ章의 冒頭에서 밝혔거나 既發表된 韓國銀行模型 및 餘他 模型의 金利政策시뮬레이션結果가 이미 McKinnon과 Shaw의 結論과 배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公金利效果의 論議時 이를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金利引上論者들은 흔히 金融仲介理論에 동조하여 나름대로 政策建議를 하나 그들의 主張은 巨視經濟模型을 통하여 立證되지 않았거나 또는 巨視經濟模型 作成過程에서 그들의 見解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할 뿐이었다.

본인이 第Ⅲ, Ⅳ章의 模型 및 分析結果를 바로 實證分析에 연결시키지 못한 것은 不動產價格에 대한 精確한 資料를 입수하지 못하였고

投機活動의 計量化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換率의 投機的 變動에 관한 實證分析이 활발하고 本人도 어느 정도 精確한 不動產價格資料를 입수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論文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模型의 主要假定이 너무 단순화되어 韓國經濟의 實情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으나 金融市場의 資金循環으로 金利效果를 살펴보는 拙稿의 目的에 비추어 보면, 主要假定이 그렇게 단순화되거나 韓國經濟의 實情을 무시한 것 같지는 않다. Lewis型의 無制限勞動供給의 假定, Harrod-Domar流의 生産函數는 經濟現實과 동떨어졌다고 論할 수 있으나 實質賃金を 변화시키거나 勞動과 資本間의 代替關係를 인정함에 따라 模型에 가해지는 복잡성을 고려할 때 賃金과 勞動·資本間 代替關係에 관한 假定緩和은 論議進行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아울러 金融仲介理論에 치우쳐서 金利效果를 논의하는 Kapur(1976)와 Mathieson(1980)의 論文이 Harrod-Domar流의 生産函數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가정하에서 어떻게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를 보이려고 實物部門에 대해서는 매우 단순한 가정을 하게 되었다.

Cambridge型의 貯蓄函數는 바로 貯蓄의 利率彈力性이 陰의 부호를 보이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가정이었으나 拙稿에서 언급했듯이 Cambridge型 貯蓄函數는 「페트만」效果를 도입시키는 '必要條件'은 아니며 다만 金利引上의 金融費用效果 내지 供給抑制機能을 트일 수 있는 하나의 貯蓄函數形態에 지나지 않는다. 論議의 要諦는 「페트만」效果에 있지 Cambridge型 貯蓄函數에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McKinnon-Shaw流의 金利效果

論議는 基本的으로 閉鎖經濟를 가정하고 있으며 開放經濟를 가정하더라도 國內金融市場에 관한 假定이 변화하지 않는 한 閉鎖經濟의 경우와 유사한 결론을 얻는다¹⁾. 關鍵은 國內金融市場 및 貯蓄에 대한 견해 차이에 있으므로 開放經濟의 가정하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論議를 閉鎖經濟로 局限시켰다.

세째, 第Ⅱ章에서는 과거 15년간 主要經濟變數變動의 圖表化 및 相關關係分析 등, 되도록 간단한 統計資料分析으로 金利效果에 관한 이해를 돕도록 하고 問題를 제기하는 데 그쳤을 뿐, 이로부터 어떤 基本的 시각을 정립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筆者가 주장하듯 金利引上의 效果를 導出하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그 效果를 도출하는 理論的 模型이 마련되어야” (拙稿 p.20) 하겠기에 第Ⅲ章의 模型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네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先進國에서조차 通貨의 外生性이나 內生性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通貨論爭으로 연결되고 있다. 政策當局이 오랫동안 通貨量을 政策變數로 보고 이를 조절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려 하더라도 通貨增加率이 政策目標에 어긋난 경우가 많았으며 年間目標自體도 景氣推移를 보아가며 수정되곤 하였다. 즉 外生的의 目標達成을 저해하는 內生的의 要因이 常存하고 있는 한 通貨는 內生的의 代價이다. 특히 論文에서 金利變化에 따른 銀行貯蓄과 私債資金間의 代替關係를 증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總通貨는 內生變數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경우 通貨의 外生性問題는 通貨概念의 올바른 定義問題와 직결된다.

한편 拙稿에서는 本源通貨增加率(σ)이 式(23)에서 外生化되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通常的 通貨概念인 總通貨는 資産間 代替效果로 內生的이라고 하더라도 中央銀行의 本源通貨 發行은 外生化되어 있는 것이다. 하여튼 通貨의 外生性問題는 因果關係檢證(causality test)과 관련지어 별도로 論議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상 네 가지 論評 외에도 公金利引上으로 오히려 資金이 不動產市場으로 逆流할 수 있다는 見解가 一般的 見解와 상당히 다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점이야말로 진정한 不動產의 역할로서 強調되어야 할 사항임을 다시 밝히려고 한다.

第Ⅰ章에서 언급했듯이 “金融仲介理論에 치우친 論文들은 金融市場을 單一化하여 오직 預金 및 貸出市場만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는 非金融市場으로 「인플레이 헤지」市場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預金金利가 오르면 暗黙的으로 非金融市場의 非生産的인 資金이 銀行圈으로 流入”(拙稿 p.16)되는 ‘第1次的 效果’만 고려할 뿐 私金融市場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公金利引上時 公·私金融間 代替效果로 物價가 上昇하거나 不動產의 實質價値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不動產市場의 屬性 또는 不動產市場의 實質價値가 一定하다는 一片的(ad hoc)인 靜態分析의 假定으로 不動產價格이 上昇함으로써 즉시 資金이 銀行圈으로부터 流出되는 ‘第2次的 效果’를 동시에 생각하여야 한다. ■

1) D. Mathieson, “Financial Reform and Capital Inflows in a Developing Economy,” *IMF Staff Papers*, September 1979.

「通貨供給衝擊과 短期通貨需要」: 論評

崔 長 鳳

*

左博士는 通貨供給衝擊이 實質通貨需要에 미치는 영향을 重要視하고, 通貨衝擊이 직접說明變數로서 實質通貨需要에 나타난 Carr-Darby(1981)의 模型을 우리나라 經濟에 적용하여 通貨衝擊과 實質通貨需要 및 物價와의 관계를 分析하고 있다¹⁾. 筆者는 먼저 左博士論文이 근거를 두고 있는 文獻의 內容을 간략히 再調整한 후에 이를 基盤으로 하여 左博士論文에 대한 筆者의 見解를 서술하고자 한다.

Carr-Darby(1981), Carr-Darby-Thornton(1985) 등은 通貨供給에 있어서의 衝擊, 즉 예

상하지 못한 名目通貨의 供給變動이 短期에는 흔히 通貨保有的 變動으로 흡수된다고 주장하고, 이 충격흡수의 效果를 직접 고려하여 소위 「通貨需要의 緩衝模型」(shock-absorber model of money demand)을 설립한 후에 實證分析을 통하여 緩衝模型의 妥當性を 立證하였다. 그러나 McKinnon-Milbourne(1984, 1986)은 Carr, Darby, Thornton 등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주로 推定方法上的 問題點을 지적하고 再檢證함으로써 緩衝模型의 妥當性を 否定한 바 있다.

通貨需要의 緩衝模型이 지니는 假說에 따르면, 예상하지 못한 名目通貨의 供給變動이 발생한 경우에 實質所得, 名目利子率 및 物價가 變動함에 따라 일부는 通貨需要의 變動으로 흡수되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인하여 名目通貨의 需要와 供給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²⁾. 이 名目通貨의 不均衡部分은 實物經濟變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通貨需要者에게 保有되며 이 保有分은 通貨需要者가 원래 원하는 通貨가 아니므로 保有되는 과정에서 物價의 變動

筆者: 韓國銀行 專門研究員

1) 左承喜, 「通貨供給衝擊과 短期通貨需要: 緩衝的 通貨需要函數에 대한 分析」, 『韓國開發研究』, 第8卷第3號, 1986, pp. 48~76.

2) 이때 만약 名目通貨의 供給이 일치하려던 實質所得, 名目利子率 및 物價에 있어서 非現實的인 급격한 騰落이 발생하여야 함.

이 수반된다. 이렇게 保有된 通貨는 通貨供給의 衝擊에 대한 緩衝役割을 하므로 緩衝通貨라고 定義되며, 또한 수반되는 物價變動은 通貨需要者의 行態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物價變動에 의하여 實質通貨規模가 결정되므로 緩衝通貨는 緩衝通貨需要라고도 定義된다.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名目通貨의 供給變動은 實質所得, 名目利子率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緩衝通貨需要의 行태로 保有되며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物價變動이 따른다. 그리고 다음 期부터는 점진적으로 物價가 變動하여 名目通貨需要의 變動으로 흡수되므로 通貨의 需給이 일치하게 된다.

한편 예상한 名目通貨의 供給變動에 대해서는 同期에 同率의 物價變動이 야기되며 實質所得, 利子率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假定한다. 즉 예상한 名目通貨의 供給變動은 實質通貨의 需要變動을 초래하지 않으며 언제나 通貨의 需給이 일치한다.

이상의 緩衝通貨需要假說下에서 名目通貨供給이 外生的으로 결정된 후에 物價의 變動을 수반하면서 實質通貨保有로 흡수되는 縮約型의 推定式³⁾,

$$m_t = \lambda\gamma_0 + \lambda\gamma_1 y_t^e + \lambda\gamma_2 R_t + (1-\lambda)m_{t-1} + \beta y_t^T + \phi \hat{M}_t + \varepsilon_t \dots\dots\dots (14)$$

m : $M - P$ (實質通貨)

λ : 調整速度

y^e : 恒常實質所得

R : 名目利子率

y^T : 일시적인 實質所得

\hat{M} : 예상하지 못한 名目通貨

이 도출된다. 이 式은 實質通貨需要를 기준으로 한 Chow(1966)型의 實質通貨 部分調整模型을 변형한 것이며 또한 동시에 物價式을 의미하고 있다. 이 式으로부터 緩衝通貨需要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通貨供給衝擊($\hat{M}_t \neq 0$)과 通貨需給의 不一致($\phi \neq 0$)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⁴⁾.

이제 緩衝模型을 표시하는 式(14)의 實證分析에 의하여 恒常實質所得(y^e)과 일시적인 實質所得(y^T)의 變動이 緩衝通貨需要에 미치는 效果가 서로 다른가의 與否外에 특히 예상하지 못한 名目通貨의 供給變動은 實質所得, 名目利子率과 物價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通貨保有로 흡수되는가의 與否, 즉 緩衝通貨需要假說을 檢證할 수 있다. 따라서 $\phi > 0$ 이면 緩衝需要假說의 正當性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phi = 0$ 이면 緩衝通貨需要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때 物價變動으로 인하여 通貨의 需給은 일치하게 된다. 또한 $\phi = 1$ 이면 緩衝需要에 의해서 物價變動이 수반되지 않음을 뜻한다.

左博士는 1970年代 후반 이후에 기존의 通貨需要函數의 豫測力과 安定性에 의문이 提起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緩衝通貨需要模型을 소개하고 그 模型이 지니는 假說을 우리나라 1971年 2/4分期~1984年 4/4分期의 資料를 이용한 實證分析을 통하여 再檢證하였다. 實證分析 結果에 따라 그는 우리나라의 經濟에서 緩衝需要假說은 강한 支持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通貨供給衝擊은 實質所得, 名目利子率과 物價 등에 급격한 騰落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左博士의 이와 같은 研究結果는 資料上⁵⁾ 여러 가지 制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緩衝通貨

3) 左博士 論文의 기호표시와 번호를 따랐음.

4) McKinnon-Milbourne, (1984) p. 265를 참조.

需要假說의 檢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서 높게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筆者는 몇 가지 앞으로 期待되는 部分과 見解의 差異가 있는 듯한 部分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通貨需要의 緩衝模型에는 예상한 通貨供給變動은 實物經濟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物價 등의 名目經濟變數에만 同期에 同率의 變動을 초래한다고 하는 假定이 內在되어 있다. 이 假定의 適合성은 美國經濟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완전히 見解의 一致를 보이는 것은 아니더라도 많이 研究된 바 있다⁵⁾. 그러나 우리나라 經濟에서 그 假定의 妥當性에 관한 研究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그 假定의 適合性與否에 따라 緩衝模型形態, 推定方法 및 推定結果 등이 變化를 보일 것이므로, 緩衝模型을 우리나라 經濟에 적용하기 전에 그 模型의 基本假定이 우리 經濟에서 成立하는가의 與否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左博士의 方法을 좇아서⁶⁾ 구한 예상한 名目通貨供給變數(M^*)와 恒常實質所得變數(y^*)간의 相關係數는 0.79(相關係數가 0일 假說을 棄却할 수 있는 有意水準은 0.01%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假定의 妥當檢討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McKinnon-Milbourne(1984), Carr-Darby-Thornton(1985) 등은 式(14)에 예상한 名目

通貨供給變數(M^*)를 추가시킴으로써 부분적으로 그 假定을 假說化하여 檢證하고 있다. 이 方法대로 筆者가 推定한 바에 의하면 M^* 의 推定係數가 0이라는 假說을 기각할 수 없었다. 즉 單一變數 ARIMA模型을 이용하여 구한 M^* 變數값이 예상한 通貨供給規模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전제 아래서는 예상한 通貨供給變動은 同期에 同率의 物價變動으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左博士도 式(15)의 推定結果인 <表 3>을 이용하여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⁷⁾.

둘째, 左博士는 式(14)와 式(15)를 별개로 推定하고 있으나 通貨需要의 緩衝模型에서 名目通貨供給(M)은 外生變數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推定結果가 갖는 意味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하겠다. 만약 M 이 內生變數라면 式(14)와 式(15)는 緩衝模型의 論理上 成立할 수 없는 式이 되며 이 경우에는 式(14)는 通貨政策當局의 通貨供給을 위한 反應函數(reaction function)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⁸⁾. 또한 예상하지 못한 通貨供給變數만 있는 경우에 M_t 와 \hat{M}_t 는 同率로 變化하기 때문에 式(15)는 推定式으로서 뚜렷한 多重共線性(multicollinearity)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式(15)보다는 式(14)의 推定이 보다 妥當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緩衝通貨需要模型의 有用성은 첫째 예상하지 못한 名目通貨의 供給變動이 實質所得, 名目利率과 物價 등에 큰 變動을 초래하기보다는 緩衝通貨需要의 형태로서 保有되는 현상을 明示한 점과, 둘째 「필립스」型과는 다른 物價反應式을 제시한 점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두번째 有用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하여 緩衝模型에 의한 物價反應式이 기존의

5) Lucas(1973), Barro(1977, 1978) 등을 참조.

6) 예상한 通貨供給規模를 測定함에 있어서 左博士가 사용한 ARIMA(1, 1, 0)(0, -1, 1) ϕ 는 불안정하여 그 대신 ARIMA(1, 1, 0)(0, 1, 0) ϕ 를 사용하였음.

7) 그러나 式(15)는 推定式으로서 다음에 說明하는 바와 같은 問題點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式(15)의 制約條件을 완화한 式(16)의 推定結果인 <表 4>로부터는 오히려 相反되는 주장이 가능함.

8) Carr-Darby-Thornton(1985), pp. 252~255를 참조. M 이 外生變數이더라도 M_t 와 ϵ_t 사이의 相關係數가 排除되는 것은 아님.

物價式보다 豫測力 혹은 安定性 등에서 우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 研究가 앞으로 期待된다. 緩衝模型의 改善與否에 따라 緩衝模型은 通貨와 物價間의 時差分析에 있어서 매우 有用할 것으로 판단된다.

네째, 左博士가 기존의 通貨需要模型에 대한 問題點을 提示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無理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우선 實質通貨需要를 기준으로 설정한 Chow(1966)型的 部分調整模型에서 “今期の 通貨量變動〔通貨供給衝擊을 포함〕⁹⁾은 그 전부가 今期の 物價變動으로 나타나게...”(p. 52)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式(3)에서 名目通貨供給의 增加率(ΔM)이 變動하면 長期實質通貨需要(m^d) 혹은 調整速度(λ)의 變動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의 주장이 반드시 正當한 것은 아니다. 그 역시 보다 핵심이 되는 또다른 問題點을 提起하는 과정에서(pp. 53~54) $dm^d/dM_t > 0$ 인 점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모순되고 있다. 즉 기존의 通貨需要模型에서는 通貨의 物價에 대한 時差效果를 分析할 수 없다는 批判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이밖에¹⁰⁾ Chow型的 模型에서 “韓國의 경우 1%의 예측되지 못한 通貨量の變動은 同分期內에 4.5%의 實質GNP의變動을 초래한다는...”(p. 53)인 非現實的인 結果가 도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낮은 調整速度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金融制度의 革新과 金融市場에서 商品市場보다 均衡이 빨리 달성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認識을 감안할 때 分期分析에 있어서 $\lambda=0.2$ 라는 假定은 너무 낮은 값이라고 하겠다. 최근의 여러 實證分析結果에 의하면 λ 는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주장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通貨의 需給은 均衡을 이룬다는 假定이 필요하다. 그러나 不連續模型에서 每期의 시작과 끝 사이에는 通貨의 不均衡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模型에 의하여서도 不均衡 기간동안에 通貨의 不均衡部分은 다른 經濟變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需要者에게 保有됨을 說明할 수 있다. 즉 이는 式(14)에서 $\phi=1$ 인 경우의 해석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左博士의 기존 通貨需要模型에 대한 批判은 과장된 듯하다¹¹⁾.

다섯째, 緩衝模型은 최근에 論議되고 있는 通貨需要函數의 安定性 및 豫測力 低下問題에 대한 하나의 解決方案으로서 이해될 수도 있으나 동시에 기존의 通貨需要函數를 改善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우월한 通貨需要函數를 緩衝模型에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신된 緩衝通貨需要假說의 檢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推定過程에 있어서 OLS의 推定結果는 물론 중요한 意味를 갖고 있지만, 그도 지적인 聯立性 偏倚(simultaneity bias)와 多重共線性(multicollinearity)의 問題가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問題點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어렵다. 또한 예상한 通貨供給規模의 測定에 있어서 우리나라 通貨供給政策의 運用과정에 비추어 볼 때 適應豫想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한 점은 실득력이 약하며 이에 따라 測定值의 妥當性を 檢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

9) []안은 筆者가 삽입하였음.

10) Carr-Darby(1981)도 유사하게 說明하고 있음.

11) 또한 그는 Goldfeld(1976)型에서는 “今期の 通貨量增加는 그보다는 더 많은 比率의 物價水準의 增加를 招來하게 된다.”(p. 52)라고 주장하나 Laidler(1982, pp. 49~51)는 個人과 社會全體의 意思決定過程을 구분함으로써 그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였음.

로 1970年代 이후에는 私債金利 내지 1年以上
定期預金金利보다는 債券收益率이 市場實勢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으며 M1統計는 同質인

적지 않은 部分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등 構
成上의 問題를 지니고 있는 사실이 分析에 반
영되기를 期待할 수 있겠다.

▷ 參 考 文 獻 ◁

- Barro, R.J., "Unanticipated Money Growth and Un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7, 1977, pp. 101~115.
- _____, "Unanticipated Money, Output, and the Price Level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6, 1978, pp. 549~580.
- Carr, Jack and Michael R. Darby, "The Role of Money Supply Shocks in the Short-Run Demand for Money,"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8, 1981, pp. 183~199.
- _____, and Daniel L. Thornton, "Monetary Anticipations and the Demand for Money; Reply to McKinnon and Milbourn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16, 1985, pp. 251~257.
- Chow, G.C., "On the Long-Run and Short-Run Demand for Mone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4, 1966, pp. 111~131.
- Goldfeld, Stephen M., "The Case of the Missing Money,"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No. 3, 1976, pp. 683~730.
- Laidler, David, *Monetarist Perspectiv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Lucas, R.E., Jr., "Some International Evidence on Output-Inflation Tradeoff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3, 1973, pp. 326~334.
- McKinnon, James G. and Ross D. Milbourne, "Monetary Anticipations and the Demand for Money,"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13, 1984, pp. 263~274.
- _____, "Are Price Equations Really Money Demand Equations on Their Heads?," Discussion Paper, No. 646, Department of Economics, Queen's University, February 1986.

「通貨供給衝擊과 短期通貨需要」: 應答

左 承 喜

*

우선 崔博士가 지적한 問題에 대한 具體的인 應答에 앞서 緩衡的 通貨需要函數假說이 좀더 명확하게 整理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崔博士의 同假說에 대한 整理部分이 오해를 惹起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면 崔博士의 해석중 “前略…이 名目通貨의 不均衡部分은 實物經濟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通貨需要者에게 보유되며 이 보유분은 通貨需要가 원래 원하는 通貨가 아니므로 보유되는 過程에서 物價의 變動이 수반된다. …中略…따라서 豫想하지 못한 名目通貨의 供給變動은…中略…緩衡的 通貨需要의 형태로 보유되며 이 過程에서 어느 정도의 物價變動이 따른다.”는 部分은 오히려

緩衡的 通貨需要假說과는 배치되는 해석이 아닌가 사료된다.

緩衡的 貨幣需要假說을 간단히 정리하면 短期에 있어 예상하지 못한 名目通貨供給變動은 實質通貨需要의 變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부연한다면 短期에 있어 기대하지 못한 通貨供給衝擊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衝擊은 物價, 利子率 및 所得에 영향을 줌이 없이 實質通貨需要의 受動的 變動을 통해 흡수된다. 이 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선 예상되는 所得과 名目利子率 및 名目通貨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의 所望實質通貨需要가 最適化過程을 통한 각 개인의 總體的인 支出計劃의 일부로써 결정되었다고 상정해 보자¹⁾. 이러한 計劃은 一般均衡論의 立場에서 볼 때 實物部門의 均衡과도 一貫性을 유지하게 될 것이며 특히 實質所得, 實質利子率 등은 實物部門의 均衡過程에서 결정되는 수준과 일치할 것이다. 따라서 貨幣市場에서의 攪亂要因인 名目通貨供給의 變動이 미리 예견된 것이라면 이는 단순히 物價水準이나 名目利子率의 變動을

筆者: 本院 研究委員

1) 論議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同假說을 좀더 명확하게 定義하기 위해 通貨主義的 立場에서 論議를 전개하고자 함.

통해 흡수됨으로써 實物部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期待된 通貨供給의 變動은 實物部門의 均衡에 대해서는 中立的인 것이다.

그러나 貨幣市場에의 攪亂이 기대되지 않은 형태로 주어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하겠다. 全體支出計劃이 이미 확정된 후 豫想하지 않은 通貨供給衝擊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支出計劃을 즉각적으로 修正하는 데는 정상 이상의 調整費用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때 緩衡的 通貨需要假說에 의하면 名目通貨供給衝擊은 바로 實質通貨需要의 受動的 變動을 통해 흡수되게 되며 따라서 短期에 있어 名目通貨供給衝擊에 따른 物價나 名目利率에의 영향은 없게 된다²⁾. 이러한 受動的 實質通貨需要의 變動은 短期에 있어 通貨供給衝擊에 따른 과도한 調整負擔을 일시적으로 緩和시키는 役割을 한다는 의미에서 ‘緩衡的 通貨需要’라고 불리어질 수 있다.

本論議의 요점은 期待하지 않은 名目通貨供給의 變動이 名目變數인 物價 및 名目利率의 變動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實質變數, 여기서는 ‘實質通貨殘高’의 變動을 惹起하게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 實質所得을 포함하는 實物部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契機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단 유보된 物價에의 영향은 서서히 時差를 두고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實質通貨殘高 및 實質所得을

포함하는 實質變數도 영향을 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物價가 通貨供給衝擊에 해당되었던 부분을 포함한 全體通貨量에 상응하는 長期均衡水準으로 접근함에 따라 實質通貨殘高 및 實質所得도 長期均衡水準으로 접근하게 된다. 결국 調整期間에 있어서의 實質所得의 變動은 緩衡的 通貨需要의 變動에 의해 유보되었던 物價水準의 變動이 時差를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通貨供給中 豫想되는 通貨供給變動은 주로 物價水準을 포함하는 名目變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實物部門에 대해 中立的이지만 豫想하지 못한 通貨供給衝擊은 實質所得을 포함하는 實物部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示唆點을 導出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최근의 合理的期待假說과의 유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으로 崔博士의 個別 論評에 대한 本人의 意見を 開陳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 문제는 豫想한 通貨供給變動은 實物經濟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合理的期待理論 및 緩衡的 需要假說의 공통된 示唆點에 대한 論議이다. 그에 의하면 豫想된 通貨供給變動과 恒常所得의 相關係數가 높고 有意하기 때문에 同假說이 거부되고 緩衡的 需要假說도 거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論理의 비약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 여기서 論議되어야 할 豫想된 通貨供給과 實質所得間의 관계는 豫想된 通貨供給과 所得趨勢에서 벗어나는 臨時所得과의 관계이어야 할 것이다. 通貨에의 衝擊이 所得에의 衝擊을 招來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꾸어서 通貨에의 衝擊이 臨時所得의 變動을 招來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豫想된 通貨供給

2) 正의 調整費用을 想定한다고 해서 短期通貨供給衝擊에 따른 즉각적인 調整可能性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겠음. 그러나 短期調整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實物部門의 均衡을 攪亂할 이 없이 調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期待되지 않은 通貨供給衝擊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는 實質變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名目變數의 調整을 통해 흡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사스럽.

과 臨時所得간의 관계를 檢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豫想된 通貨供給과 趨勢所得(恒常所得)간의 關係는 豫想된 通貨供給이 어떤 형태로든 實物經濟構造에 變化를 일으킬 수 있는 경로가 있는 한 相關關係를 보일 것이며 이러한 증거가 合理的의 期待假說이나 여기서의 緩衝的 通貨需要假說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論理的 비약이라 하겠다³⁾. 더구나 그의 檢證方法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豫想된 通貨供給과 趨勢所得간에는 通常의 時系列變數들에 있어서와 같이 公同의 時間趨勢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相關關係 分析만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分析을 위해 단순한 ARIMA模型을 이용해서 通貨(M1),

實質所得 및 物價(CPI)의 期待部分과 期待되지 않은 부분들간의 相關關係를 구해보았다. 結果는 <表 1>에 要約하였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期待變數들간의 높은 相關關係이다. 崔博士에 의해 보여진 바와 같이 豫想된 通貨供給과 恒常所得間에는 물론 豫想物價를 포함하는 3變數間의 正의 相關關係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선 豫想通貨供給과 豫想物價간의 正의 相關關係는 거의 1에 가까와 豫想通貨供給과 恒常所得間의 相關係數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로 豫想通貨供給과 臨時所得 및 豫想外的 物價變動과는 아무 相關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셋째로는 豫想하지 못한 通貨供給衝擊은 오직 臨時所得하고만 有意하게 正의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表 1> 通貨, 所得 및 物價間의 相關關係

	y^*	CPI*	M1	\hat{y}	CPI
M1*	0.884 (0.0001)	0.979 (0.0001)	-0.213 (0.118)	-0.158 (0.249)	-0.020 (0.886)
y^*		0.854 (0.0001)	-0.212 (0.121)	-0.339 (0.011)	-0.171 (0.218)
CPI*			-0.180 (0.189)	-0.171 (0.213)	-0.113 (0.413)
M1				0.308 (0.022)	-0.180 (0.189)
\hat{y}					-0.177 (0.196)

註: 1) (): 相關係數가 0이 될 確率.

2) * 부호는 期待值, \hat{y} 부호는 期待되지 않은 값을 표시하며, 모든 경우에 대해 ARIMA 模型을 이용.

- 3) 한가지 豫想通貨供給變動이 趨勢所得에 正의 影響을 미칠 수 있는 경로로, 소위 말하는 Tobin效果를 들 수 있음. 이에 의하면 豫想通貨增加는 期待인플레이의 增加를 惹起함으로써 金融資産에 대한 實物資産의 收益率을 상대적으로 높여 줌으로써 經濟의 實物資本形成을 도모해 주는 效果를 갖음. 이때 趨勢所得은 資本소득의 增加에 따라 增加하게 됨. 이에 대해서는 Fischer(1979)를 参照. 더구나 合理的의 期待論者들이 주장하는 豫想하지 못한 通貨供給衝擊의 非中立性도 바로 趨勢所得이 아닌 臨時所得의 變動과 關聯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음. 예로써 Grossman(1980)을 参照하기 바람.
- 4) 이러한 세 變數間의 높은 正의 相關關係는 部分的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히 성장하는 動態經濟에서 나타나기 쉬운 相互間의 共通된 時間趨勢를 反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임.

이러한 사실들은 崔博士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合理的期待假說 혹은 緩衝的需要假說의 示唆點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豫想된 通貨供給과 恒常所得간의 높은 正의 相關關係의 원인이 糾明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의 원인으로서는 相互間的 趨勢變動은 물론, Tobin 效果를 포함, 豫想通貨供給의 實質經濟構造 變化效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變數들 相互間的 因果關係를 糾明함이 없이 단순한 相關關係만을 보고 가부간의 結論을 내리는 일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關聯하여 崔博士는 既存研究들을 따라 豫想된 通貨供給變數가 實質變數에 영향을 준다는 假說을 檢證하는 한 방법으로 豫想된 通貨供給變數를 추가적인 通貨需要의 說明變數로 사용하였으나 期待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바로 崔博士가 행한 단순한 相關關係 分析이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同一한 方法에 따라 原論文 <表 2>의 첫번째 줄 式 (14)의 結果를 再推定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m_t = 0.174 + 0.132 y_t^* + 0.214 y_t^r - 0.004 R_t \\ (2.44) \quad (5.54) \quad (1.79) \quad (-4.64) \\ + 0.915 m_{t-1} + 1.051 \hat{M}_t - 0.038 M_t^* \\ (21.97) \quad (10.18) \quad (-1.91) \\ \bar{R}^2 = 0.9915, \quad \hat{\sigma} = 0.034 \\ \text{Durbin-}h = -1.18528, \quad () : t\text{값}, \\ \text{期間} : 1971. 2/4 \sim 1984. 4/4.$$

모든 變數는 原論文에서와 같은 變數를 이

용하였다. M_t^* 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이 結果는 원래 結果와 大同小異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豫想된 通貨供給變數 (M_t^*)의 係數는 93% 水準에서 有意한데 係數가 절대값으로 낮기는 하지만 負의 부호를 갖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히려 豫想된 通貨供給은 物價水準을 높임으로써 實質通貨需要를 減少시키는 役割을 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오히려 緩衝의 通貨需要假說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崔博士는 原論文의 式 (14)와 式 (15)의 關係에 대해서 論評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筆者의 意見은 다음과 같다.

우선 式 (14)와 式 (15)는 별개로 존재하지 않으며 두 式은 공히 동일한 假定에서 成立한다. 式 (14)는 實質殘高需要를 설명하는 式이며 여기서 名目通貨供給(M_t)이 外生變數이기 때문에 物價(P_t)를 從屬變數로 하는 物價式의 존재근거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 名目通貨를 從屬變數로 하는 需要函數(名目殘高를 基準으로 한 需要函數)를 豫測한다면 이는 外生變數를 內生變數(P_t)로 설명하는 結果가 되어 우스운 모양이 될 것이다. 그러나 外生變數인 名目通貨를 內生變數인 物價로 換價한 實質通貨需要를 式 (14)와 같이 豫測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또 崔博士는 註 8)에서 M_t 가 外生變數라 하더라도 攪亂項(ε_t)과의 相關關係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점 또한 問題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개인의 通貨需要 決定에서처럼 주어진 物價 및 利子率下에서 임의의 名目通貨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通貨가 巨視的으로 볼 때 外生이라 하더라도 內生化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反映할 수 있는

개개인에 대한 cross-section 資料를 이용한 分析인 경우는 M_t 와 ϵ_t 간의 相關이 생기겠지만 巨視 時系列分析인 경우는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겠다.

한편 崔博士가 지적한 式 (15)의 推定時 發生하는 實際通貨供給變數와 期待되지 않은 通貨供給衝擊과의 多重共線性的 問題는 理論上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實際 $M1$ 과 $M1$ 간의 相關係數는 -0.16270 으로 有意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0일 확률은 23.5%임).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名目通貨供給을 外生變數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式 (14)나 式 (15) 공히 瑕疵 없는 模型이라 할 수 있겠다.

세째로 崔博士가 지적한 物價式的 豫測力 및 安定性 測定問題는 전적으로 崔博士의 見解에 동의하며 좀더 뜻있는 研究가 더 많이 이루어 지기를 期待한다.

네째로 崔博士는 原 論文 第 II 章에서의 既存模型에 대한 問題點의 제지에서 무리한 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하였으나 우선 本著者가 무리한 주장을 自意的으로 했다기보다는 既存模型의 示唆點을 있는 그대로 정리했음을 밝혀 두어야 한다. 한편 原 論文 式 (3)과 相關 崔博士가 지적한, 名目通貨供給이 변화하면 長期 實質通貨需要(m_t^*) 혹은 調整速度(λ)도 變動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式 (3)은 이러한 「메카니즘」을 명시적으로 導入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模型에 基礎하는 한, 原 論文에서와 같은 結論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式 (6)과 相關하여 名目通貨供給衝擊이 長期 實質

通貨需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假定하고 있어 이는 式 (3)과 相關된 論議와 서로 모순된다고 하였는데 式 (3)과 式 (6)이 論議되는 前後關係(context)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오해는 사라질 것이다. 後者の 경우는 短期通貨供給衝擊의 독립된 效果를 적절히 그리고 명시적으로(예를 들면 緩衝의 需要函數와 같이) 導入하지 않을 경우 既存模型下에서는 短期通貨供給衝擊이 어떠한 示唆點을 갖는가를 설명하고 있음에 주의하기 바란다. 또 한가지 原 論文에서는 崔博士가 받아들인 것처럼 既存模型에서 通貨와 物價간의 時差關係를 分析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既存模型이 암시하는 通貨와 物價간의 時差關係가 비현실적임을 지적했을 뿐임을 양지하기 바란다.

이와 相關하여 崔博士는 최근의 金融市場 與件變化 추세를 볼 때 關聯된 實證分析 結果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λ 값이 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勘案한다면 既存模型의 弱點을 補完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지만 불행한 것은 이러한 方向으로의 체계적인 模型 改善이 그리 容易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崔博士가 지적한 것처럼 λ 가 최근에 높아지고 있다면 이는 通貨需要의 構造的 變化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模型에 導入하기는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니라 하겠다⁵⁾.

한편 原 論文의 式 (4)와 相關하여서 Laidler는 物價의 同 分期內 「오버슈팅」 現象은 不合理하다고 보고 이를 解消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個人實驗을 援用하여 式 (2)에서 前期末의 名目通貨保有 M_{t-1} 은 事實상 期初의 名目通貨保

5) 緩衝의 通貨需要 假說도 결국은 既存模型의 構造的 變化를 勘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有로 解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式 (2)에서 M_{t-1} 는 M_t 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때 式 (4)에서 物價의 同分期內 「오버슈팅」 現象은 解消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⁶⁾. 崔博士는 註 11)에서 이러한 주장을 원용하여 式 (2) 및 式 (4)로 표시되는 Goldfeld 型을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Laidler의 努力은 어떻게 하면 Goldfeld型

이 갖는 不合理한 점을 교정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지 Goldfeld型 자체를 옹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쨌든 崔博士의 주장이 示唆하는 것처럼 既存模型에 대한 補完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러한 努力이 非體系의인 方法으로 이루어져서는 별로 도움이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다섯째로 崔博士가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여섯째로 지적한 計量經濟學的 問題들은 이 分野에서 研究하는 누구누가 직면하는 문제로서 별 淸楚한 代案을 제시할 수 없음을 아쉬움을 느낀다. 보다 많은 分들의 깊이 있는 研究가 있기를 期待할 뿐이다. 한편 $M1$ 계열의 構成上의 問題를 提起하였는데 이 기회를 빌어 同一한 分析이 $M2$ 와 現金通貨에 대해서도 이루어졌으며, 大同小異한 結果를 얻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고자 한다.

6) Laidler(1982), chapter 2 參照. 그에 따르면 각 개인은 期初의 通貨保有量에서 출발하여 자유롭게 通貨保有量을 調節함으로써 期末의 所望保有量을 確保할 수 있으나 全體經濟로서는 期初의 通貨供給變動을 포함하는 期初의 總供給量을 期末에도 그대로 保有하지 않으면 안됨. 한편 論理의 期初가 되는 個人實驗의 경우 前期末과 期初의 通貨保有量이 通貨供給變動에 의해서 淸楚할 수 있기 때문에 部分調整模型은 期初保有量에서 期末保有量으로의 調整을 설명하게 됨. 이때 이 두 保有量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巨視經濟에 적용할 경우는 일단 期初通貨供給變動이 일어난 후의 期初通貨量과 期末通貨量은 정의상 같아야 하기 때문에 個人實驗에서 M_{t-1} 로 표시되는 期初通貨量은 巨視模型인 式 (2)의 경우에는 M_t 로 대체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주장함.

▷ 參 考 文 獻 ◁

左承喜, 「通貨供給衝擊과 短期通貨需要: 緩衝의 通貨需要函數에 대한 分析」, 『韓國開發研究』, 第 8 卷 第 3 號, 1986 가을, pp. 48 ~76.
 崔長鳳, 「通貨供給衝擊과 短期通貨需要: 緩衝의 通貨需要函數에 대한 分析」에 대한 論評.
 Fischer, Stanley, "Anticipations and the Nonneutrality of Mone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7, No. 2, 1979, pp. 225 ~252.

Grossman, Herschel I., "Rational Expectations, Business Cycle, and Government Behavior", Stanly Fischer ed., *Rational Expectations and Economic Policy*, A Conference Report Stanley Fisch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p. 5~22.
 Laidler, David, *Monetarist Perspectiv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빈 면

『國民年金制度의 基本構想과 經濟社會 波及效果』: 書評

閔載成 金仲秀 共著 韓國開發研究院 刊(1986) 總364面
李德勳 徐相穆

金 秀 坤

※

史上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經濟成長速度와 이에 따른 都市化·核家族化 現象 및 人口의 老齡化現象은 國民福祉, 그 중에도 특히 老人福祉를 위한 年金制度實施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높은 政策課題임을 실감케 하였다. 本報告書는 이러한 필요에 부응한 시의 적절한 研究이었으며, 이는 다시 政策建議까지를 포함함으로써 國民年金法 改正의 骨格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報告書에 대한 書評은 보통 다른 書評과는 달리 本報告書가 함축하고 있는 政策的 示唆點은 물론이려니와, 立法過程에서 그리고 執行過程에서 나타났거나 나타날 수 있는 問題들을 총망라해서 評價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이 報告書의 構成을 보면 第1部에서는 先進國에서 發達한 公的年金制度를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年金制度 導入의 必要性和 基本骨格을 제시하였다. 第2部에서는 年金의 財政推計를 하고 이것이 金融市場, 勞動市場 및 所得分配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分析하였다.

第1章은 福祉國家의 發達類型을 논하였는데 英國과 美國을 市民文化型으로, 獨逸과 日本을 臣民文化型으로 각각 區分하고 이 네 나라의 年金制度를 歷史的으로 비교적 상세히 考察하였다. “臣民社會에서는 勞働者를 保守的 統治體制에 포섭하고자 하는 動機가 크게 작용하고 표현된 데 비하여 市民社會에서는 그런 家父長的 動機를 비난하고 保險의 自助原則을 통한 貧困豫防機能이 강조되었다.” 그 설파한 것은 이 兩大主流에 대한 特性을 같이 해한 것이라고 본다. 著者が 말한 바와 같이 “市民社會의 社會保障制度는 市場經濟라는 바다에서 市場外的인 分配理論을 고수하는 심치럼 全體社會脈絡과는 異質的인 制度로 존재하(고)… 臣民社會의 경우에는 福祉國家의 등장 이 政治經濟理念上的 不連續線을 의미하지 않

(으며)…社會保障制度는 生産性的 犧牲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生産性 向上과 國民統合이라는 超越的인 國家目標達成의 手段이었다.”고 하며 매우 說得力있는 分析과 理論을 제시하였다. 이 部分은 年金뿐만 아니라 社會保障制度를 研究하는 學生들에게도 모두 읽히고 싶을 정도의 매우 풍부한 내용이 간결한 문장 속에 담겨져 있다. 다만 이를 統攝하여 우리나라 與件에 再照明하는 結論에 있어서는 韓國의 社會的·經濟的 與件이 英國·美國과도 다르고 獨逸·日本과도 다른 政治文化를 形成하였다는 것을 指摘하였을 뿐 처음에 著者が 제시한 臣民文化型 또는 市民文化型 그 둘 중 어느 것에 더 가까운 形態가 될 것인가, 또는 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했음이 매우 아쉽다고 하겠다.

第2章은 國民年金制度의 導入背景과 必要性을 논하였다. 導入必要性에 대하여는 人口의 年齡構造 變化와 家族形態의 變化樣相에 관한 구체적인 資料를 제시하였다. 특히 經濟的 與件이 成熟했음과 「베이비 붐」세대가 勞動市場에 進入하는 이때에 年金制度를 실시하지 않고 보다는 더 늦게 시작한다는 것은 財政面에서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論理는 매우 說得力이 있다.

그러나 第1節 導入背景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不充分했다고 생각된다. 1973년에 통과된 國民福祉年金法은 1974년에 있는 油類波動 때문에 그 實施를 保留했다고만 설명했는데 歷史的 背景에 관한 좀더 소상한 研究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예를 들면 KDI에서, 특히 당시 朴宗洪 博士팀이 主動이 되어 草案이 作成되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國會를 屢번히 通過한 法案인데도 大統領의 拒否

權 行使도 없었으면서 行政府는 그 法의 實施를 마음대로 保留할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히 政治的 혹은 行政上的 문제라 해서 덮어 들 것이 아니라 將次的 立法 및 行政秩序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立法效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좀더 깊이 있게 다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公式的으로 는 그같은 保留가 「오일 쇼크」 때문이요 事後的으로는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實施하지 않았던 것이 마치 잘된 것처럼 論理가 전개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國會를 通過할 때까지는 매스컴이 대체로 支持하는 편이었으나 通過된 후에는 갑자기 批判의 소리가 크게 일었는데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輿論先導者들은 同福祉年金案이 마치 重化學工業投資財源을 마련하기 위한 手段으로 動員된 것인양 輿論을 몰고 나갔으니, 이는 애초에 이들이 그와 같은 資金活用方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인가? 당시의 輿論先導者들이 과연 누구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으리라 믿는다. 國民福祉年金法案에 대한 反對輿論이 있었다면 어떤 根據에 의해서 어느 集團으로부터 가장 큰 反對가 있었으며 어느 集團에서 支持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分析이 많은 示唆點을 던질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73年法에서는 退職金에 대한 言及이 전혀 없었던 이유와 이번 改正法에서 그것을 包含 折衷시키게 된 動機 등에 대해서는 비록 확실한 資料가 未備하다 하더라도 論議해 볼 만한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第3章에서는 年金制度의 骨格을 論하였거니와 첫째 우리나라 年金財政運用을 초기에는 積立方式으로, 나중에는 賦課方式으로 定着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論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와 반대의 方法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積立方式으로 통일하는 것이 건전한 財政運用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所得分配의 不平等은 正必要性은 20~30년 후보다 지금 당장 급한 課題일 뿐만 아니라 당면한 老齡人口의 福祉問題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의 經濟發展의 役軍이 되었던 이들 世代에게는 積立方式을 適用한다는 명분으로 인해(20년간 적립하지 못했으니) 年金受領者가 못되게 하고 그동안 積立한 것만큼만 一時拂로 받게 함으로써 年金制度로부터 疎外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積立方式을 채택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制度를 택할 것이지만 이들 世代에게만 혜택을 剝奪하듯이 하고 나중에는 賦課方式으로 한다고 하니 이는 財政黑字만을 생각해서 고안된 것으로, 世代間 衡平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指摘을 면치 못할 것이다.

適用對象 業體, 年齡, 年金支給開始年齡 등에 관해서 상세한 檢討가 되어 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財源調達方法에 있어서도 釀出料率이 勤勞者 平均月賃金의 약 10%線은 되어야 財政收支의 安定을 상당기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는 대체로 타당한 것이라 보여진다. 釀出金の 負擔을 勞·使·政 三者가 말도록 하되 政府는 行政管理費만을 補助토록 하는 것도 타당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勞使間의 分擔比率에 관해서는 異論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第1案은 初期에 使用者負擔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現 退職金積立金額 8.3% 중에서 1.5%를 年金釀出財源으로 代替하면서 加入者(被傭者)는 새로이 1%를 負擔하여 습

計 2.5%를 1991년까지, 그리고 1992~95년에는 使用者 3%, 加入者 2%를 각각 分擔케 하며 2000년 이후에는 각각 6%와 4%를 負擔케 하여 10%를 積立한다는 案이다. 이미 立法過程에서 결정된 것이지만 原案에 대한 異論을 제기한다면 第1案은 결과적으로 被傭者는 新規로 1%를 釀出하는 데 비하여 使用者는 1.5%를 고스란히 退職金積立金으로부터 代替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 새로운 負擔을 지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衡平에 어긋나는 것이고 被傭者의 福祉를 위해 두었인가를 해준다고 잔뜩 선전해 놓고는 결국 使用者는 더 내는 것이 없는데 被傭者만 새로 부담한다는 데 대한 反撥을 일으켰던 것이다.

나중에는 어찌되었건 처음 始發點에서부터라도 公平한 負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被傭者들의 생각일 것이고, 더욱 勤勞者側에서 생각하는 바로는 退職金 8.3% 積立을 벌써 오래 전에 勤勞基準法에 의해서 이미 따놓은 「파이」(몫)인데 여기서 일부를 떼어낸다는 데 대해서는 여간 反撥이 심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第2案은 최초에는 退職金에 손대지 말고 勞使 똑같이 新規로 1.5%씩 負擔케 하고 1992~95년에는 被傭者 2%에 使用者 3%로 하되 그 받은 退職金으로부터 代替기로 한 것이다. 이 부분은 계속 상승하여 2000년에는 4.5%가 되어 總使用者 6%, 被傭者 4%를 負擔하지만 年金實施로 인해 使用者가 新規로 負擔해야 하는 量은 처음부터 계속 1.5% 그대로 持續되는 것으로서 第1案보다 勤勞者에게 有利한 것이 별로 없다. 다만 第1案에 비해 退職金積立部分을 1.5%포인트만큼 덜 減額한다는 것밖에 없다. 때문에 이 두 案은 다 받아들여지

지 못하고 妥協案인 3·3·3制가 채택되었던 것이다(최초의 3·3·3制에 대해서는 『每日經濟新聞』 1985년 1월 8일자 社説 참조), 즉 勞使가 다 같이 新規로 각각 3%씩 負擔하고 退職金으로부터 3%를 代替하도록 함으로써 勞使間의 新規負擔의 公平性을 기하면서 점진적으로 退職金 年金化의 길을 터놓았으며 동시에 9%까지의 基金積立을 가능케 해준 셈이 된다.

釀出對象의 報酬 上下限線의 문제와 관련하여(p. 116) 下限線의 不必要性은 논할 필요조차 없지만 上限線의 必要性은 文脈上으로는 認定하는 듯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아무런 提案이 없었던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上限線이 없을 경우 高所得者도 全賃金所得에 대하여 同率의 釀出料를 負擔하게 됨으로써 釀出과 給與 사이에 상호연계가 없는 한, 所得再分配의 효과는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高所得者에 대한 보호가 너무 결여된다는 약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給與의 범위와 종류, 그리고 年金基金의 運用方法에 대해서도 本報告書는 충실한 分析을 하였다. 年金管理機構를 中央政府보다는 獨立의이면서 自律性이 인정되는 公團 또는 公社形態로 編成·組織할 것을 勸告하고 있다. 이는 매우 적절한 건의로 생각되거나 그 組織의 人的構成에 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한 건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즉, 여기에 필요한 專門·技術人力과 一般行政職員의 대략적인 수도 다른 나라의 실례를 토대로 제시할 수 있었으면 준비기간 동안 필요한 人力의 確保를 위해 募集, 訓練 또는 教育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칫 이러한 機構가 退役公務員의 待機場所化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行政組織뿐 아니라 人事面에도 신경을 썼더라면

보다 더 유익한 靑寫眞이 되었을 것이다.

第4章에서는 退職金制度, 産災補償保險制度, 醫療保險制度 및 기타 既存의 公的年金制度와의 調整問題를 論하였는데 특히 現行 退職金制度에 대한 批判은 그 전에 KDI에서 조사한 結果에 토대를 둔 것으로서 勞·使 양쪽에서 一方의인 主張만을 할 것이 아니라 合理性에 입각한 國民經濟的 次元에서 심사숙고해볼 價値가 있는 部分이다. 다만 年金과 退職金의 算定方式을 제시한 가운데에서는(기타 모든 部分에서도 그랬듯이) 假想的인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약간 비현실적인 인상이 없지 않다. 10年 勤續한 사람이 그 退職金을 60歲 隱退時까지 支給받지 못한다는 것은 88년에 일시에 中間清算하는 것이 使用者에게 무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個人에 또한 너무나 심한 무리를 가하는 것으로서 再考의 餘地가 있다고 본다.

年金의 財政推計와 分析을 第5章에서, 貯蓄과 金融市場에 年金이 미치는 波及效果를 第6章에서 각각 다루었다. 財政推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假定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일일이 그 假定을 살펴보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대체로 60여년간을 推計期間으로 보면 積立方式에 의한 推計結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年金制度의 金融市場에 미치는 效果가 긍정적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당연한 추정이다.

第7章에서는 勞動需要와 供給에 미치는 效果를 분석하였고 第8章에서는 所得再分配에 미치는 效果를 分析하였다. 年金의 勞動需要 減退效果는 長期的이 아니라 초기에 短期的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假定은 옳을 것이며 現 退職金의【대부분이 社內留保되어 있는 것이므로 退職金積立分으로부터 年金釀出金을 代替했

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企業에게는 新規負擔을 줄 것이라는 論理 또한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3·3·3制로 이를 적용해 본다면 年金寄與分 3%를 法定退職金으로부터 代替했을 때 1萬名 雇傭當 1~2名 정도의 雇傭減少效果를 惹起시킬 것으로 보았던 것으로부터 新規負擔은 그 2배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雇傭減少效果란 年金이 가져 올 혜택에 比한다면 무시할 정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勞働供給에 대한 效果는 短期的이 아니라 長期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미 先進産業國들에서 많은 實證的 研究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引用·提示하고 우리나라의 諸條件을 參照하여 潛在的 波及效果를 類推하였다. 첫째 停年時點으로부터 年金受給開始年度까지의 기간에는 退職金制의 特殊性 때문에 오히려 勞働供給이 많아질 것이라고 推測하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1987년도에 들어와서 보는 바와 같이 國營企業體를 위시하여 一般企業에 이르기까지 停年이 55歲로부터 점차 연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점은 다소의 修正을 요할 것이다. 다른 한편 55歲 이상 就業者比率이 상승하는

추세를 놓고 年金制度의 供給減少效果를 論하는 過程에서 著者は 勞働供給에 관한 所得的 負的效果만을 강하게 意識한 듯한 印象을 준다. 그러나 實際 勞働供給은 賃金의 代替效果에 더욱더 敏感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그랬을 때 年金으로 인한 勞働供給의 감소추세는 上昇하는 實質賃金速度에 의해서 상쇄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年金給與가 平均報酬에 比例하게 되는 均等部分에 있어서는 所得再分配效果를 매우 긍정적으로 본 것 같은데 구태여 이를 否認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다만 老齡年金이 제아무리 所得再分配를 위해 設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賃金平準化나 稅制를 통한 方法에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方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혹시나 所得再分配效果를 너무 과대평가할 경우에는 非現實的 國民의 期待感만 높일 수도 있다는 점은 指擧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本研究가 전체적으로 類例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包括的인 分析을 통해서 政策에 直接的 影響을 줄 수 있는 巨作이었음을 指擧하면서, 著者들의 勞苦에 讚辭를 보내는 바이다. ■

빈 면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書評

延 河清 著 韓國開發研究院 刊(1986) 總348面

鄭 暢 泳

*

北韓經濟에 대한 研究는 그 重要性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온 分野라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著者が 指摘하고 있듯이 우선 北韓社會가 수많은 社會主義國家中에서도 가장 閉鎖的인 社會로서 統計資料가 지극히 制限되어 있으며 發表되는 資料마저도 信賴度가 낮다는 것이 한 가지 理由일 것이다. 이 밖에 南·北韓간의 理念的인 對立도 北韓經濟를 客觀的인 立場에서 學問的으로 研究·分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사이에 존재하는 基本的인 體制上的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基準에 따라서 北韓經濟를 分析하고 南·北韓 經濟를 比較·評價함으로써 韓國經濟의 優越性만을 강조하여 北韓經濟

의 實狀을 客觀的으로 理解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統一을 위한 제일 첫번째 段階가 南·北韓 經濟交流의 實現에 있다고 할 때, 이를 위한 基礎作業으로서 北韓經濟에 대한 客觀的이고 學問的인 研究의 重要性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큰 것이다.

이번에 韓國開發研究院의 延河清 博士가 지금까지 出版된 著書 및 論文들을 蒐集하고 北韓經濟에 대해 구할 수 있는 統計資料들을 광범위하게 活用하여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이라는 著述을 펴낸 것은 이 分野의 研究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점을 상기할 때 學界에 대한 커다란 貢獻이라고 생각된다. 이 冊에서는 冊名과는 달리 北韓經濟의 主要한 側面을 거의 모두 포괄하여 綜合的으로 分析하고 있어서 오히려 「北韓經濟論」이라는 題目이 이 冊의 內容을 더욱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다.

이 冊은 모두 9章으로 構成되어 있다. 第1章의 序論에 이어서 第2章에서는 우선 南·北韓의 GNP와 1人當 GNP를 比較하고 있다.

1984년 현재 韓國은 GNP와 1人當 GNP에 있어서 각각 北韓의 5.5배와 2.6배에 달하고 있음을指摘한다. 그러나 著者が 말한 대로 體制上的 基本的인 差異點, 資料의 制約 및 換率適用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平面的인 比較는 그 意義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겠다. 오히려 貨幣的인 側面에서의 比較보다는 實物的으로 南·北韓간의 生活的 質(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 PQLI)을 比較한다든가 基本需要(basic human needs)의 充足이라는 側面에서 본다든가 하는 것이 資料의 求得이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는 觀點을 정반대로 잡아 北韓經濟의 立場에서 南·北韓의 經濟力을 比較·評價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일일 것이다.

著者は 總量比較에 이어서 分斷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南·北韓이 推進해 온 經濟計劃의 特性을 比較하고 있다. 北韓經濟는 經濟建設과 軍備擴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重工業最優先政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므로 輕工業部門과 社會間接資本部門이 낙후되어 産業間的 不均衡이 심화되고 經濟成長은 限界에 도달한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물론 이는 北韓經濟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社會主義經濟가 지니는 共通의 취약점이자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로 인한 社會主義經濟 共通의 非效率性이 존재함을 감안하고 本報告書의 <表 2-2>가 보여주는 것처럼 다른 여러 社會主義國家들과의 經濟成長率을 比較해 보면 北韓도 成長의 側面에서는 어느 정도 成果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表 3-1>이 보여주는 것처럼 北韓當局 自身이 發表한 工業部門의 成長率이 分斷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減少趨勢를 나타내는 것은 北韓의 經濟體制

自體가 지니고 있는 基本的인 취약점에 연유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그 중 하나가 與件에 맞지 않는 自力更生原則下的 重工業最優先政策과 과도한 軍備支出임은 쉽게 납득이 갈 것으로 판단된다.

經濟計劃의 比較에 이어서 다음에는 南·北韓의 貿易構造를 比較하고 있는데, 韓國은 美國과 日本에 대한 依存도가 높은 반면 北韓은 1982년의 경우 貿易量의 比重이 蘇聯 33.9%, 中共 21.2%, 日本 17.5%로서 이들 세 나라에 대한 依存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南·北韓 公히 貿易比重이 높고 資料의 蒐集이 비교적 용이한 日本에 대한 南·北韓의 輸出入構造를 比較·分析함으로써 南·北韓의 貿易構造 및 貿易競合關係를 상세하게 研究하고 있다.

第3章에서는 최근 北韓의 第2次 7個年計劃(1978~84)을 評價하고 있다. 著者は 北韓이 自國의 資源賦存 樣相에 적합하지 않은 自力更生原則의 추진으로 인한 技術水準의 落後와 生産施設의 老朽化, 그리고 硬直的인 中央集權的 經濟運用 및 産業部門간의 不均衡이 北韓經濟政策의 ‘失敗原因’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北韓經濟體制가 지니고 있는 基本的인 特徵이라고 할 수 있는데 經濟의 非能率을 초래하여 時間이 경과함에 따라 北韓의 經濟成長率을 鈍化시킨 主要因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第4章에서는 北韓의 對外開放政策을 分析하고 있다. 北韓은 1970년 이후 既存路線을 어느 정도 修正하여 對西方開放政策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對西方輸入增加는 外債를 증가시켜 1975년 이후부터 北韓은 外債에 대한 元利金償還을 연기하는 사태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더 이상 西

方으로부터의 輸入增大가 어려워진 北韓은 第2次 7個年計劃期間(1978~84) 중에 다시 中·蘇와의 經濟協力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狀況을 타개하기 위하여 北韓은 1984년 9월에 借款과는 달리 元利金 償還負擔이 따르지 않는 外國의 合作投資를 유치할 목적으로 ‘合作會社運營法’(合營法)을 制定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北韓의 對外開放 政策的 劃期的인 轉換點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合營法 實施 이후 호텔, 百貨店, 病院의 建設이 3件 實現되었고 현재 合營을 위해 交渉中인 것이 30餘件이 된다고 하나, 著者が 指摘하였듯이 北韓經濟體제의 基本的인 屬性에 비추어 볼 때 合營事業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밖에 第4章에서는 南·北韓간에 交易可能品目を 選定하기 위하여 日本에 대한 南·北韓의 輸出入品目を 調査하고 있다. 그 결과 상당수에 달하는 品目이 南·北韓 사이에 交易可能性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이미 1984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서 개최된 南·北 經濟會談에서도 쌍방이 제시한 交易可能品目 가운데 여러 品目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著者が 제시한 南·北韓 사이의 交易推進方向中 특히 韓國은 北韓에 대해 工產品을 輸出하고 北韓은 韓國에 대해 1次產品을 輸出하는 식의 垂直分業形態는 北韓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의 優位性을 나타내는 交易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見解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第5章에서는 北韓의 GNP를 推定하는 問題에 대하여 論議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問題點이 있는데 첫째는 GNP를 定義하는 방식이 社會主義體制과 資本主義體制간에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며, 둘째는 주로 消費財에 賦課되는 것으로서 小賣價格과 都賣價格의 차이로 볼 수 있는 去來收入金이 市場經濟下의 間接稅와 유사한 性格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가의 問題이고, 셋째는 換率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著者は 既存 北韓의 GNP를 推計한 崔周煥, 金永圭, 李豊의 세 方法이 각각 어떠한 問題點을 지니고 있는가 檢討하고 있다. 그리고 共產圈國家에서 政府의 豫算이 보통 GNP의 60%에 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北韓도 政府 豫算이 GNP의 60%를 차지할 것이라는 假定下에 北韓의 GNP를 單純推定한 著者 自身の 結果를 보여주고 있다. 結論의으로 金永圭, 李豊 및 著者の 推定値는 서로 비슷하여 北韓의 GNP規模를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評價(p. 143 및 p. 256)되고 있다. 그러나 著者が 指摘하고 있듯이 北韓의 GNP를 제대로 推定하는 데에는 아직도 더 많은 研究作業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既存의 研究方向에 따라 GNP를 推定하는 作業을 계속 發展시키는 이외에, 基本需要를 얼마나 충족시키며 또한 生活의 質은 어떠한가를 南·北韓간에 比較·評價하는 것도 이미 앞에서 指摘한 대로 유익한 研究課題가 될 것이다. 또한 北韓은 主要 工產品, 農產品 및 에너지源의 生産量을 物量單位로 發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實物側面에서 南·北韓의 經濟力이나 經濟規模를 比較·分析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作業이고, 우리 基準이 아닌 北韓의 基準을 사용하여 南·北韓의 經濟力을 비교해 보는 것도 시도할 價値가 있는 研究라고 생각된다.

第6章에서는 南·北韓의 産業構造를 비교

하고 있다. 특히 工業部門의 경우 北韓은 經濟·軍事建設의 併進政策을 추진하기 위하여 重工業最優先政策을 오랜 기간동안 지속해 온 결과로 工作機械部門이 우세한 반면 韓國은 輸送機械와 電子工業部門에서 優位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指摘하고 있다.

第7章에서는 北韓의 貿易構造를 자세하게 分析하고 있다. 1984년 현재 北韓의 交易量中 共產圈國家가 차지하는 比重은 59.6%, 西方圈國家의 比重은 40.4%이다. 北韓의 貿易規模는 1980년에 最高水準에 달하였는데 輸出은 16.4億달러이었고 輸入은 17.1億달러였다. 한편 1981년말 현재 北韓의 外債殘額은 약 30億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우리 基準으로는 절대규모가 작으나 閉鎖經濟體制를 유지하고 있는 北韓의 立場에서는 상당한 規模에 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北韓의 國別 輸出構成(1984년)을 보면 蘇聯 38.0%, 中共 22.9%, 日本 11.1%, OECD諸國(日本 제외) 12.5%, 東歐 3.6%이었고 같은 해의 輸入構成은 蘇聯 33.7%, 日本 22.1%, 中共 17.8%, OECD(日本 제외) 8.4%, 東歐 3.3% 順이었다.

北韓은 貿易統計를 發表하고 있지 않으므로 貿易相對國인 蘇聯, 中共, 日本 등에서 發表한 對北韓 輸出入統計를 이용하여 北韓의 輸出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推定値는 研究機關別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 관한 여러 종류의 統計資料中 貿易統計가 가장 求得이 용이하므로 앞으로 北韓에 대한 研究는 貿易分野에서 비교적 尠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第8章에서는 北韓의 經濟運用 및 이와 관련된 基本的인 制約點을 살펴 본 후 北韓의 經

濟運用에 대한 意思決定의 土臺가 되는 基本的인 價値觀에 대하여 分析하고 있다. 또한 北韓의 과도한 中央集權의인 意思決定過程이 지니는 취약점을 補完하기 위해 채택된 靑山里 方法과 大安體系의 意義를 살펴 보고 있다.

한편 冊의 <表 8-1>을 보면 北韓의 總豫算 가운데 軍事費가 차지하는 比率이 1971년까지는 30%線을 초과하다가 1972년부터 갑자기 17.0%로 떨어진 후 1980년에는 14.7%까지 減少하였는데 이는 실제에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意圖的으로 比率을 줄여서 發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北韓의 指導者들이 일반적으로 韓國의 社會, 政治體制를 경멸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體制를 選好하고 있다는 판단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韓國의 對策은 經濟成長의 優越性 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自由'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人間이 自由를 누린다는 것은 다른 어떤 價値體系보다도 優位에 있는 것이며 體制의 優越性은 바로 이 점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韓國經濟의 立場에서는 衡平의 增進을 도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資本主義體制를 건전한 방향으로 發展시켜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第9章은 要約 및 結論이며 이어서 國內외의 參考文獻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수록하고 있다. 끝으로 附表를 통해 本文의 資料를 자세히 補完하고 있으며 또한 合營法 및 그 施行細則을 附錄으로 실고 있다.

北韓經濟를 폭 넓게 理解하고자 하는 讀者들에게 이 冊은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記述上의 問題로 論議의 構成이 다

소간은 體系的이지 못한 느낌이 있고 英語式 表現이 눈에 띄는 흠이 있으나 이는 사소한 問題이며 전체를 理解하는데는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報告書가 學界에 대한 귀중한 貢獻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앞으로는 北韓經濟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研究外에 微視的이고 分野別의 구체적인 研究도 필요할 것 같다. 또한 北韓의 GNP推定에서 보듯이 北韓經濟에

대한 基礎的인 研究의 強化가 특히 要求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韓國은 GNP가 1,000億달러의 수준을 넘어 經濟規模로 볼 때 全世界에서 20位로 成長한 經濟大國인 만큼 앞으로는 北韓經濟에 비하여 韓國經濟가 優越하다는 것을 보이는 研究에서 進一步하여 客觀的으로 北韓經濟의 微視分野를 좀더 研究·分析하는 接近方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案內

- ① 韓國「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金光錫 著 18 切判・122 面
高級洋裝・3,000원
- ② 穀價政策의 計劃化~次善의 糧穀政策
文八龍 著 18 切判・158 面
高級洋裝・3,000원
- ③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潘性紘 著 18 切判・250 面
高級洋裝・4,000원
- ④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金光錫 著 18 切判・146 面
高級洋裝・3,000원
- ⑤ 農產物價格分析論~理論과 政策
文八龍 柳炳瑞 共著 18 切判・318 面
高級洋裝・5,000원
- ⑥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洪元卓 編 18 切判・254 面
A.O. Krueger 高級洋裝・4,400원
- ⑦ *SOCIAL SECURITY IN KOREA*
朴宗淇 著 18 切判・198 面
高級洋裝・4,000원
- ⑧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L.P. Jones 著 18 切判・294 面
高級洋裝・4,400원
- ⑨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金光錫 共著 18 切判・336 面
L.E. Westphal 高級洋裝・5,000원
- ⑩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判・236 面
高級洋裝・4,000원
- ⑪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金秀坤 著 18 切判・202 面
高級洋裝・4,000원
- ⑫ 韓國의 鐵鋼需要分析
宋熙季 著 18 切判・250 面
高級洋裝・3,500원
- ⑬ 韓國鐵鋼工業의 成長
金胤亨 著 18 切判・508 面
高級洋裝・6,800원
- ⑭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
金迪教 編 18 切判・492 面
高級洋裝・6,400원
- ⑮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金迪教 編 18 切判・342 面
高級洋裝・5,000원
- ⑯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金善雄 編 18 切判・532 面
高級洋裝・6,800원
- ⑰ 韓國電力需要 및 價格의 分析
張榮植 著 18 切判・252 面
高級洋裝・4,400원
- ⑱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李奎億 著 18 切判・370 面
高級洋裝・5,600원
- ⑲ 賃金과 勞使關係
金秀坤 著 18 切判・244 面
高級洋裝・4,000원
- ⑳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洪思媛 著 18 切判・214 面
高級洋裝・4,000원
- ㉑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判・410 面
高級洋裝・6,000원
- ㉒ 成長과 構造轉換
金光錫 共著 18 切判・194 面
M. Roemer 高級洋裝・3,500원
- ㉓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林浩奎 著 18 切判・306 面
高級洋裝・5,000원

- 24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南相祐 著 18 切判・204 面
高級洋裝・3,500원
- 25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金光錫 共著 18 切判・166 面
朴俊卿 高級洋裝・3,500원
- 26 *COMMUNITY DEVELOPMENT
AND HUMAN REPRODUCTIVE
BEHAVIOR*
洪思媛 著 18 切判・198 面
高級洋裝・4,000원
- 27 農業投資分析論
文八龍 共著 18 切判・250 面
林栽煥 高級洋裝・4,000원
- 28 纖維・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金榮奉 著 18 切判・180 面
高級洋裝・3,500원
- 29 鐵鋼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南宗鉉 著 18 切判・192 面
高級洋裝・4,000원
- 30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上)
朱鶴中 編 18 切判・470 面
高級洋裝・6,400원
- 31 韓國의 國土・都市・環境
宋丙洛 編 18 切判・410 面
高級洋裝・6,000원
- 32 韓國의 保健財政과 醫療保險
朴宗淇 著 18 切判・272 面
高級洋裝・4,500원
- 33 石油化學工業의 現況과 展望
具本英 著 18 切判・236 面
高級洋裝・4,000원
- 34 成長과 都市化問題
宋丙洛 共著 18 切判・270 面
E.S. Mills 高級洋裝・4,500원
- 35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林浩奎 著 18 切判・306 面
高級洋裝・5,000원
- 36 韓國工業化의 原因과 그 要因
金光錫 著 18 切判・272 面
高級洋裝・4,000원
- 37 保健醫療資源과 診療生活圈
延河清 共著 18 切判・336 面
金學泳 高級洋裝・5,500원
- 38 韓國의 教育과 經濟發展
金榮奉 外 18 切判・272 面
N.F. McGinn 高級洋裝・4,500원
- 39 貿易・外援과 經濟開發
A.O. Krueger 著 18 切判・256 面
田英鶴 譯 高級洋裝・4,000원
- 40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判・414 面
高級洋裝・6,000원
- 41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判・384 面
高級洋裝・5,000원
- 42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1910~75*
A. Keidel 著 18 切判・268 面
高級洋裝・4,500원
- 43 韓國의 農村開發
文八龍 共著 18 切判・396 面
潘性統 高級洋裝・6,000원
D.H. Perkins
- 44 需給構造과 物價政策
李煥 著 18 切判・288 面
高級洋裝・5,000원
- 45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司空壹 共著 18 切判・410 面
L.P. Jones 高級洋裝・6,000원
- 46 *PRIMARY HEALTH CARE
IN KOREA*
延河清 著 18 切判・214 面
高級洋裝・4,000원

47 韓國 經濟・社會의 近代化

金滿堤 外 18 切判・530 面
E.S. 메이슨 高級洋裝・6,800원

48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外換政策

李天杓 著 18 切判・228 面
高級洋裝・4,000원

49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下)

朱鶴中 著 18 切判・432 面
高級洋裝・7,000원

50 國民經濟와 福祉年金制度

延河清 共著 18 切判・428 面
閔載成 高級洋裝・7,000원

51 技術革新의 過程과 政策

金仁秀 共著 18 切判・402 面
李軫周 高級洋裝・7,000원

52 韓國의 經濟開發과 人口政策

R.레퍼트 外 18 切判・328 面
金善雄 高級洋裝・5,000원

53 韓國의 金融發展 : 1945~80

D.C.골 共著 18 切判・334 面
朴英哲 高級洋裝・5,600원

54 韓國의 賃金構造

朴烜求 共著 18 切判・440 面
朴世逸 高級洋裝・5,200원

55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金光錫 共著 18 切判・238 面
朴俊卿 高級洋裝・5,400원

56 轉換期의 韓國經濟와 金融政策

金重雄 共著 18 切判・354 面
南相祐 高級洋裝・5,600원

57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延河清 著 18 切判・348 面
高級洋裝・4,200원